

원가정보호를 위해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선욱(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원가정보호

-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원가정보호가 강조
- 아동복지법 제4조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원가정보보호

- 오늘의 발표 내용:
 - 국가가 매년 공표하는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 숫자로 보는 원가정 보호

숫자로 보는 원가정 보호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작성기간 및 대상 : 2022.1.1.~2022.12.31. 기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 ('22.12.31. 현재 아동을 보호조치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자료 작성)

구분 시·도	보호대상 아동 발생수	귀가및 연고자 인 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장애여부		
			계	남	여	유기	미혼 부모 혼외 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 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계	비장애	장애
합 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3,756	1,467	2,289	1,115	1,174	73	252	0	11	1,103	139	235	70	110	296	2,289	2,179	110

숫자로 보는 원가정 보호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단위 : 명)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일시보호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계	남	여	시설보호		가정형보호		
	소계	남	여	양육시설		자립지원 시설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소계	남	여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567		0		12		287		47					52		802		114					381		27	
1,881	913	438	475	540	27	0	0	12	0	272	15	30	17	968	474	494	52	0	772	30	114	0	408	203	205	361	20	26	1

숫자로 보는 원가정 보호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1. 통계의 명칭 :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보건복지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17034호 [1994.01.29.]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4.03.04.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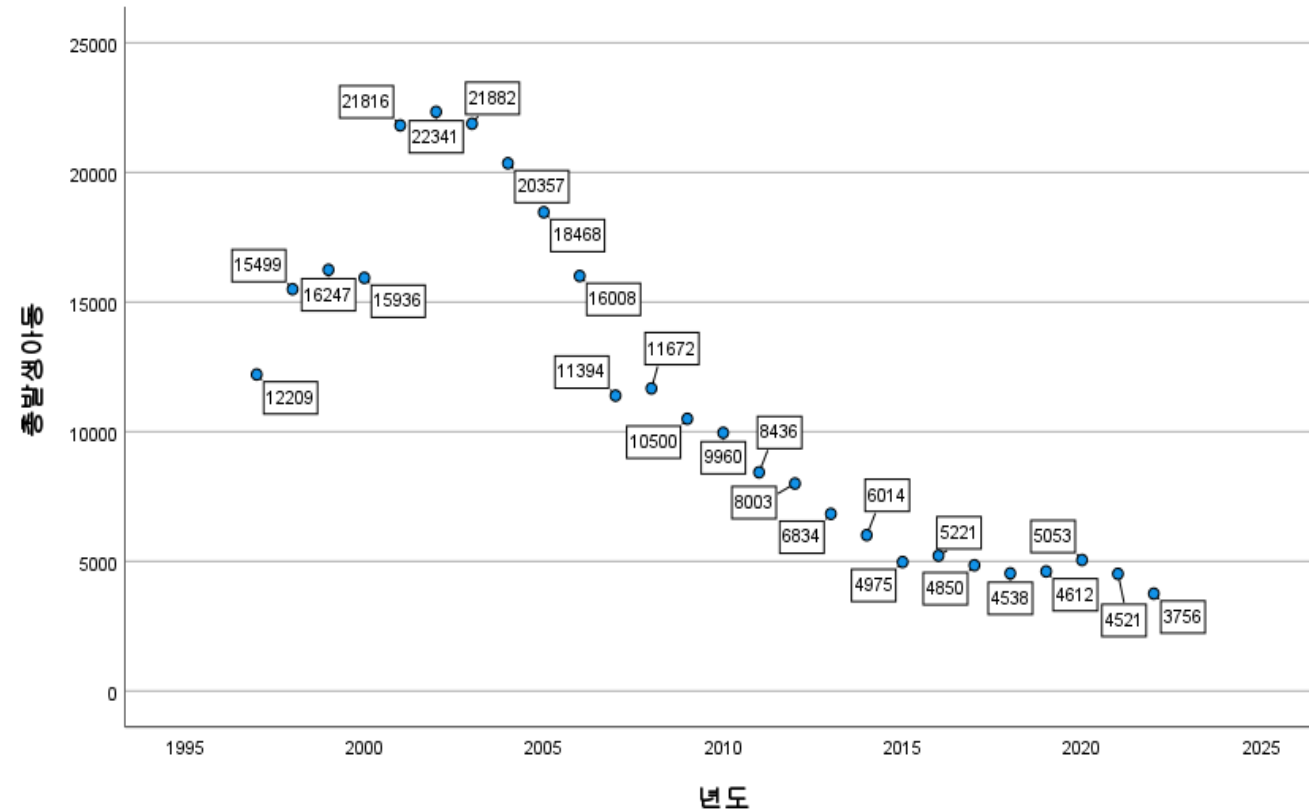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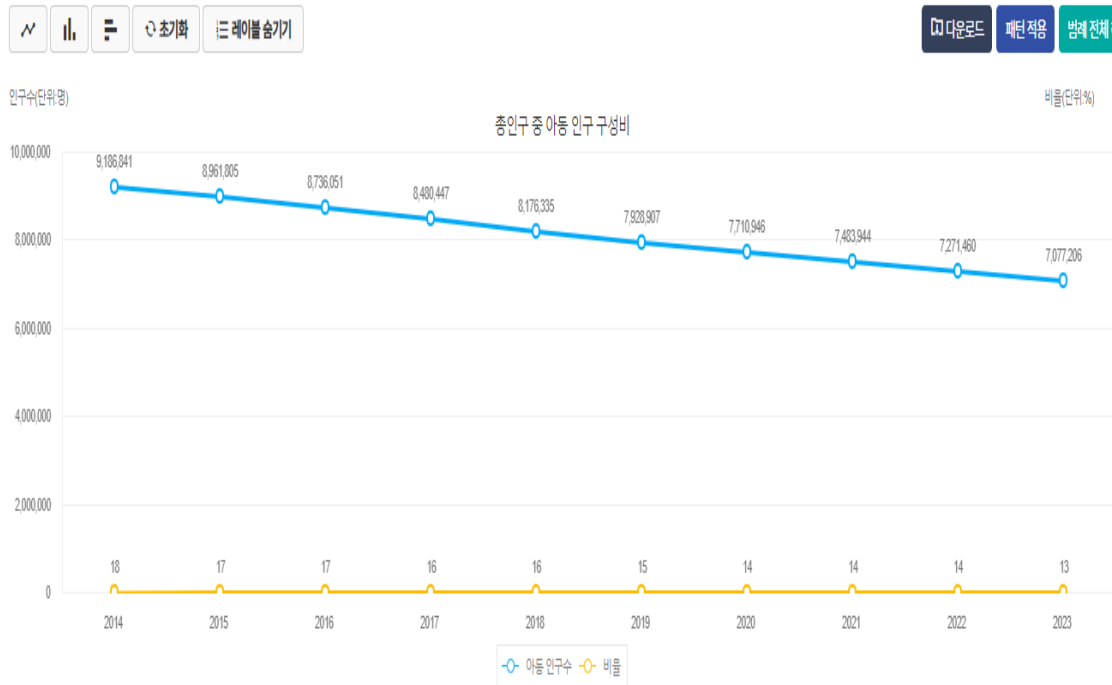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결과표	●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 시설입소 - 가정보호 · 입양 · 가정위탁 · 입양 전 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 시설입소 - 가정보호 · 입양 (삭제) · 입양대상 (신설) · 가정위탁 · 입양 전 위탁 (삭제)	- 보호대상 아동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실제 입양이 이루어진 현황과 차이가 발생하여 통계수치에 대한 항목명을 명확히 할 필요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18세 미만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보호대상아동(신규 발생 기준)의 경우 전반적으로 쭉 감소하기는 하는데 들쭉날쭉하는 모습도 있음.
- ⇒ 사실 발생이 아님. 발생의 사전적 의미: “생겨남”
- ⇒ (세상에 온) 아동이 태어나보니, 그리고 자라면서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아동이 되었다. 보호자가 직접 찾아오거나 학대로 신고되거나 베이비박스에서 넘어오거나 거리 등에서 발견되는 등등
- ⇒ 그래서 아동복지체계에서 발견됨. 아동복지체계 내에서 발견된 취약아동이 보호대상아동임.
- ⇒ 이러한 발견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 ⇒ 취약아동이 모두가 발견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것도 아님.
- ⇒ 결국 취약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이 불분명함.
- ⇒ 예를 들어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2022)에서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아동으로 봄. 즉, 취약아동을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으로 보고 있음
- ⇒ 취약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즉, 경제적 취약성을 포함 그 이상까지 커버*), 취약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예방), 보편적(모든 아동) 지원 확대 필요, 다양한 취약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 ⇒ 2024년 5월 1일 발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 – 에서,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대상 확대 언급(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대상 확대 검토)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 다양한 취약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이것이 없다 보니, 취약성이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은 1) 분리, 2) 재분리하는 상황 발생. 재분리는 중간보호종료(원가정복귀, 전원, 기타(예, 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사회적 입원 등이 해당함.
- 1) 분리: 분리 혹은 시설보호가 최선이 아닌 것은 알겠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가? 분리의 사례
- 2) 재분리 사례: 취약한 아동이 다시 기존 보호체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기도 함. 다음의 사례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지금 이번에 이제 가정 복귀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충동성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자살 시도를
지금 세 번째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음독까지 해 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지금
이번에 퇴원을 해서 집에 가 있는 중이거든요. 시설에서는 이제 아이가 자기 시설에서 또 자살 시도해서
죽을까 봐 겁이 나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이번에 음독을 했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에서 음독을 했
기 때문에 학교에도 오는 것도 겁이 나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의사를 밝히고 있는 중이고 또 어머니는 집에 오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또 케어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중략) 그래서 퇴원하기 전에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보호자하고 상담을 했는데, 지금 아이가 중학
교 3학년 여자아이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에는 스무 살을 넘기기 힘들 거다 20살을 넘기
기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보호자한테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울
면서 얘기를 좀 하셔서 이 아이가 집에 오면은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동보호전담요원, 2023년 FGI 중에서)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 다양한 취약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가장 최근에는 3) 재보호(다시 시설보호) 등장
- 재보호는 무엇인가?
- 재보호는 다시 밀려나는 상황(보호 => 자립준비 => (재)보호): 회전문 현상
- 재분리는 극단의 배제로 볼 수 있음
- “다시 뱉어내는 지역사회”: 시설이 정신장애인을 시설 밖으로 뱉어내 버린다고 하더라도 친밀성의 공간인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역공동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의 기능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최명민, 권자영, 김기덕, 2016)
-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기존 사회조직의 보호와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지지를 기대하는 기존 기관 및 조직들 역시 근대사회적 공간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의 보호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됨.(최명민, 권자영, 김기덕, 2016)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아동복지법 제16조의 4(재보호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16조의4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재보호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이후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는 시설이 고향만큼 원하면 기존 시설에 단기간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도와주야 한다”(복지부 1차관 인터뷰, 2023년 12월)

- 18세에 종료, 자립준비청년이 되었다가 뒤늦게 대학 진학한 경우 재보호의 대상이 됨. 재보호조치되면 자립준비청년 자격이 정지됨.
- 현재 6월 5일까지,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을 정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난 상태임.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입법예고안은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아동복지법에는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 ▲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이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이 외에도 입법예고안에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 다양한 취약성에 대한 다양한 지원

- 다양한 지원으로 충분할까?: 취약성이 있고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함.

- 사례결정위원회 기록 사례: 사례를 들어보세요.

- 0세

친모(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 및 양육 포기 로 인한 입양 의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입양 의뢰	사전
--	---------------	-------	----

- 3세

친부모 이혼 및 친모의 경제적 어려움, 정신 질환으로 가정 내 아동 양육자 부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입소
--	---------------	-----------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 다양한 지원으로 충분할까?: 취약성이 있고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함.
- 누구의 인식이 변화
 - 1) 친생 부모: 스스로 자격 있는 부모인가? 자문. 더 나은 부모에 대한 환상을 갖기도 함. 양육할 권리(의무) 포기
 - 2) 아동보호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자격 있는 부모(Deserve to be Parents?)
 - 3) 국민: 시설 후원은 **뉴스가 된다**
 - 4) 정책결정자: 사람의 인식이 변할 수 밖에 없는 환경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함. 재보호 법안 통과 사례, IMF 사례, 지상 최고의 가치는 "안전"
=> BEYOND DESERVING, 모든 부모의 양육권 인정, 보장해야 함, 해로운에 대한 새로운 관점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3) 국민: 후원을 어디에? Dozier, M., Zeanah, C. H., Wallin, A. R., Shaffer, C. 2012. Institutional Care for Young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Policy Implementa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6(1), pp. 1-25.

- 아동 양육에서 있어 가족의 중요성과 시설 생활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모두가 알아야 함
- 기부자들은 보육시설이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지지. 보육시설이 초래하는 피해를 잘 알지 못함
- 시설보호 아동의 대부분이 부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많음.
- 그래서 아동 양육에서 시설보호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 기부자와 자원봉사자가 시설 보호와 그 결과,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OPTION의 가용성과 중요성에 대해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교육해야 함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4) 정책결정자: IMF 사례(1998년): IMF 때 분리를 허용함

서울시의 경우 올들어 시립아동상담소에 보육원-고아원 입소를 문의한 건수가 9월말 현재 2천806명.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51명보다 70%나 증가했다. 실제 입소건수도 지난해 동기 37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218명이 늘었다. 이영희 소장은 "연말까지 예년보다 2배 증가한 8백여명이 수용될 것 같다"며 "IMF가 몰고온 가정 파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4) 정책결정자: 지상 최고의 가치는 "안전 "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종결 사유 중 하나: 피해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장기보호조치가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이 초과하였으나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023년 신설)

1. 숫자1 –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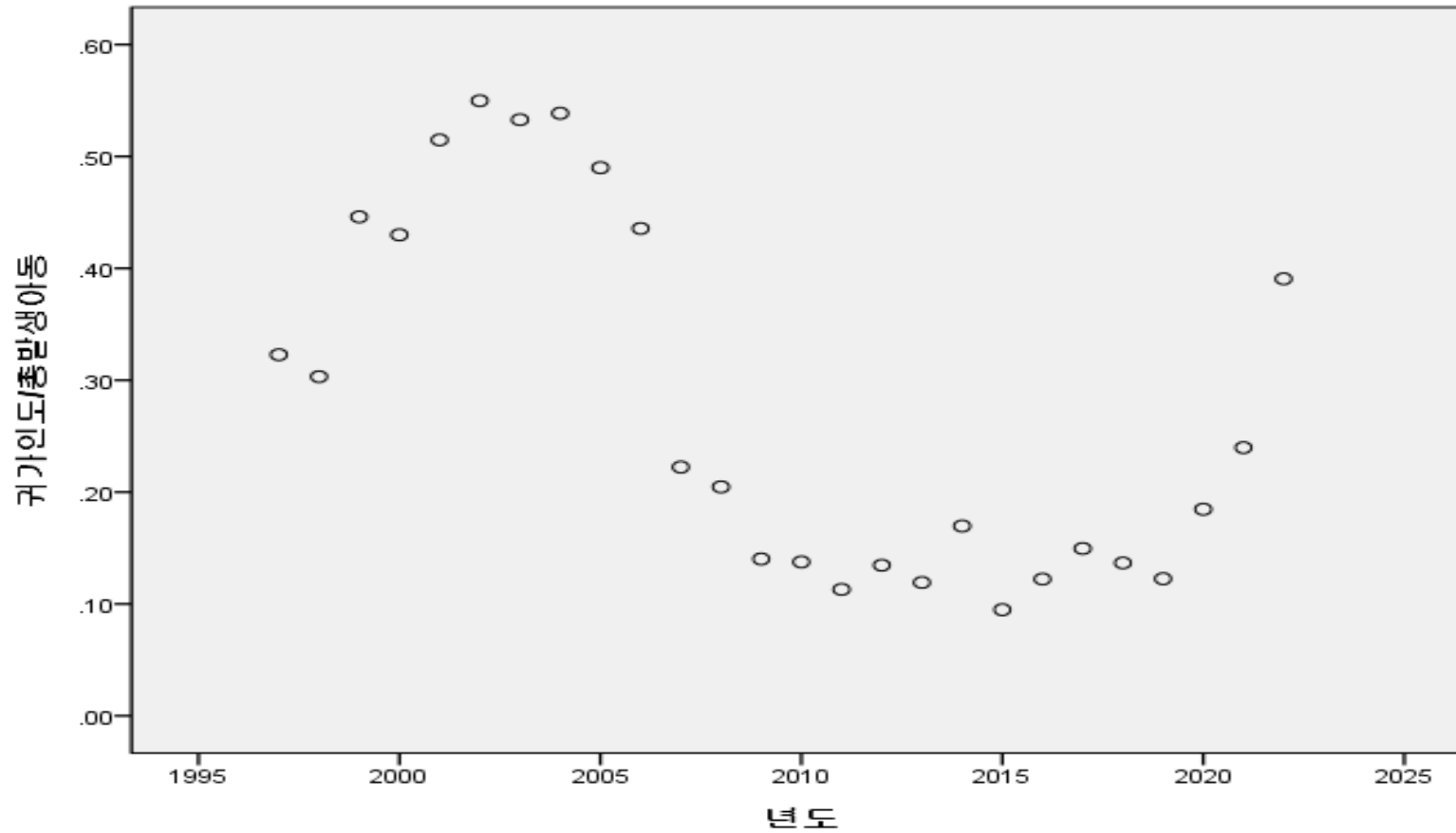
4) 정책결정자: 보호체계의 초점 변화가 필요. 스코틀랜드 사례

- 보호체계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는 “가족 지원” VS “복지서비스, 위험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상반된 인식에 갇혀 있음.
- 가족지원을 이야기하면 안전을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복지서비스는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 감소에 중점을 두어 안은 극대화하지만 가족을 사랑이 있는 환경(loving environment)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함.
- 위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함. 스코틀랜드가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때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을 포함하여 위험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을 뜻함.
- 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사랑의 관계(stable, long term loving relationships)를 갖지 못할 위험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함.

2. 숫자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보호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발생-귀가 및 연고자 인도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비율:
 - 2016년 12.2%, 2017년 14.9%, 2018년 13.7%, 2019년 12.3%, 2020년 18.5%, 2021년 24.0%, 2022년 39.1%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이후,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비율이 크게 증가

2. 숫자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2. 숫자 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귀가 및 연고자 인도는 읍면동 또는 드림스타트로 의뢰되었을 듯함.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되지 않은 아동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에 대한 통계(취약의 원인 파악, 접수 상담,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이후 조치 등) 필요함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화 => 접수 상담 표준화(강화)되어야 함. 입양 상담 외 모든 친생부모 접수 상담을 기록 관리(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역할 확대, 인력 충원, 아동권리 중심의 상담 진행 등 강조, FGC 활용 시범 적용

2. 숫자 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illegible]

2. 숫자 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FGC 활용 시범 적용

- 국내 상황: 종결 전 모니터링에서 종결가족회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2024 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
- 이때의 종결가족회의는 아동과 사례관리대상자, 가족구성원이 사례종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종결 전 모니터링** 시 가정 내에서 대상자와 함께 종결 관련 가족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 가족회의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경우 생략 가능

2. 숫자 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FGC 활용 시범 적용: 초기부터 적용

- 국외 상황: 잉글랜드 Family Group Conference(이하 FGC)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유용한 증거기반실천임. 특히 보호 절차 초기 단계에서 아동이 보호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임(Foundations, 2023).
- FGC는 가족, 친구,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족 구성원이 주도하는 회의임. FGC는 아동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적(보호조치) 절차의 필요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의사 결정 및 계획에 가족을 참여시키는 방법임 (Foundations, 2023).

2. 숫자 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FGC 활용 시범 적용

- 잉글랜드: 무작위실험 결과에 의하면, FGC에 의뢰된 아동의 36.2%가 보호조치 되었는데 FGC에 의뢰되지 않은 아동은 44.8%가 보호조치됨. FGC에 의뢰된 아동의 경우 보호조치된 이후에도 보호 기간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짧았음. FGC에 의뢰된 아동의 경우 보호조치 기간이 87일, 그렇지 않은 아동은 115일이었음.

2. 숫자 2 – 귀가 및 연고자 인도

- FGC 활용 시범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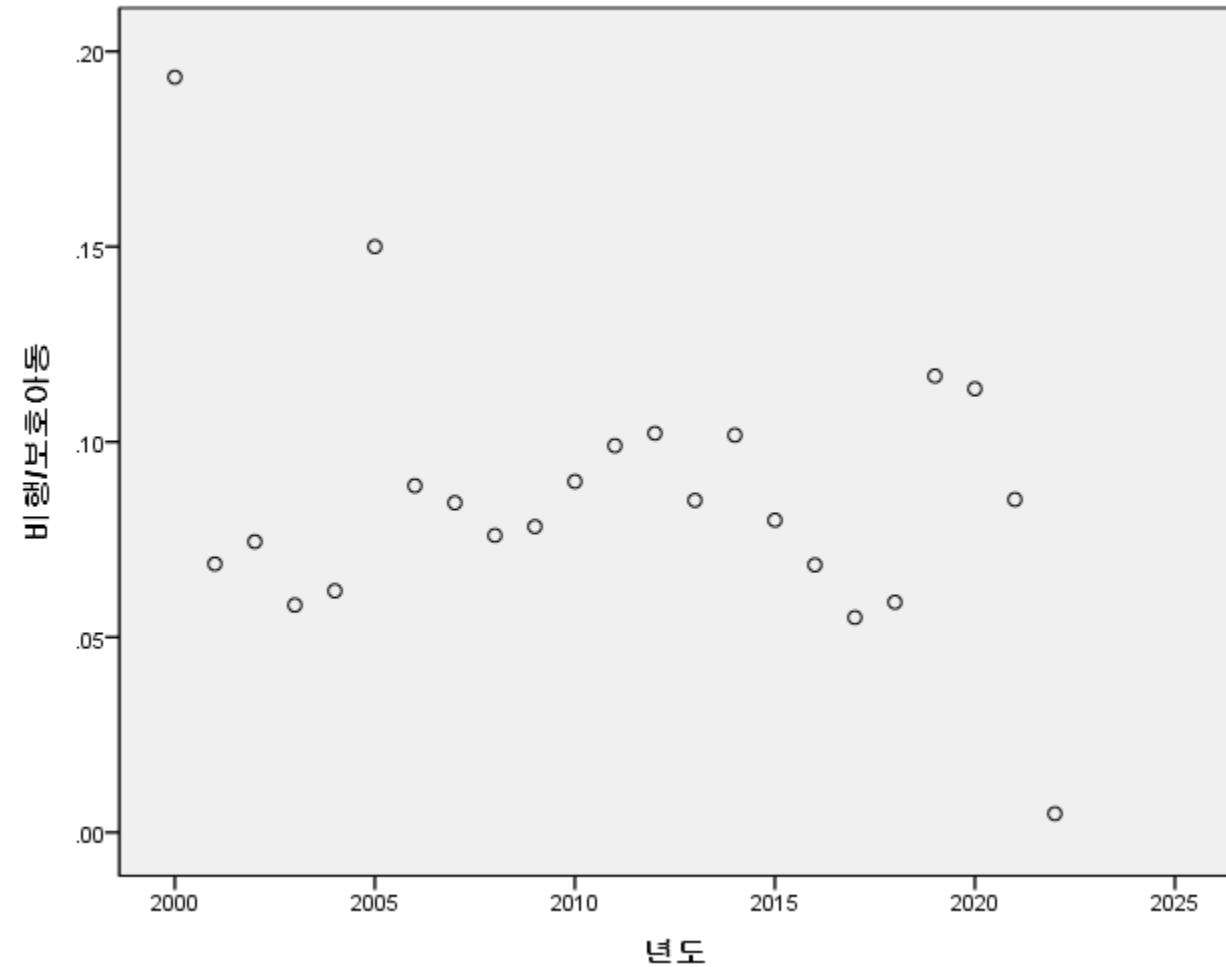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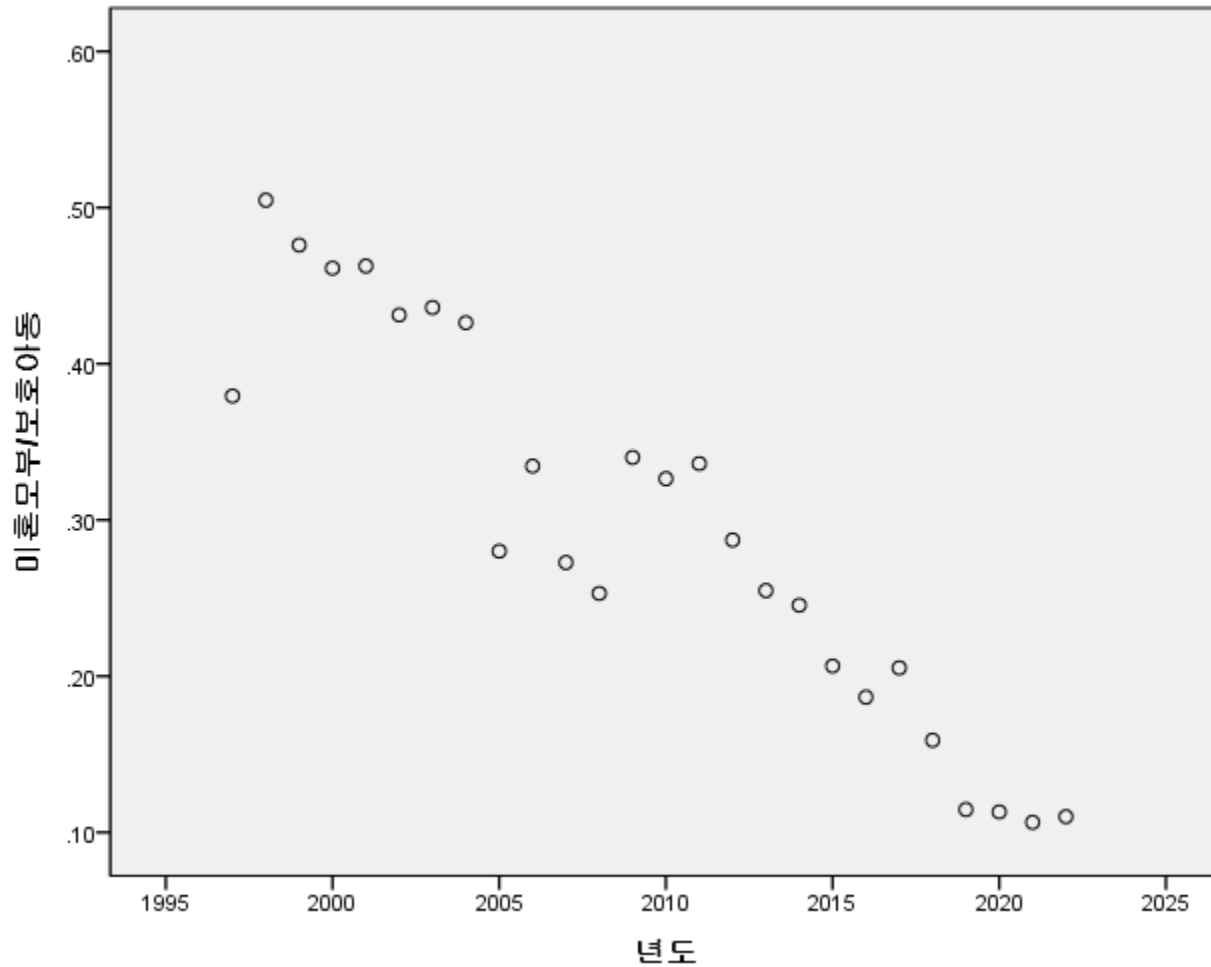
- CARE가 필요하거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에 의해 FGC에 의뢰됨 (김미숙, 2021).
- **소년사건을 중심으로 FGC 운영:** 1989년 「아동, 청소년 및 가족법(Children, Yo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Act 1989), 이하, 1989년법2)」을 제정하여 가족집단회의 (Family Group Conference)를 소년법원의 심리에 앞선 개입 수단의 하나로 도입하면서 제도화(김혁, 2020)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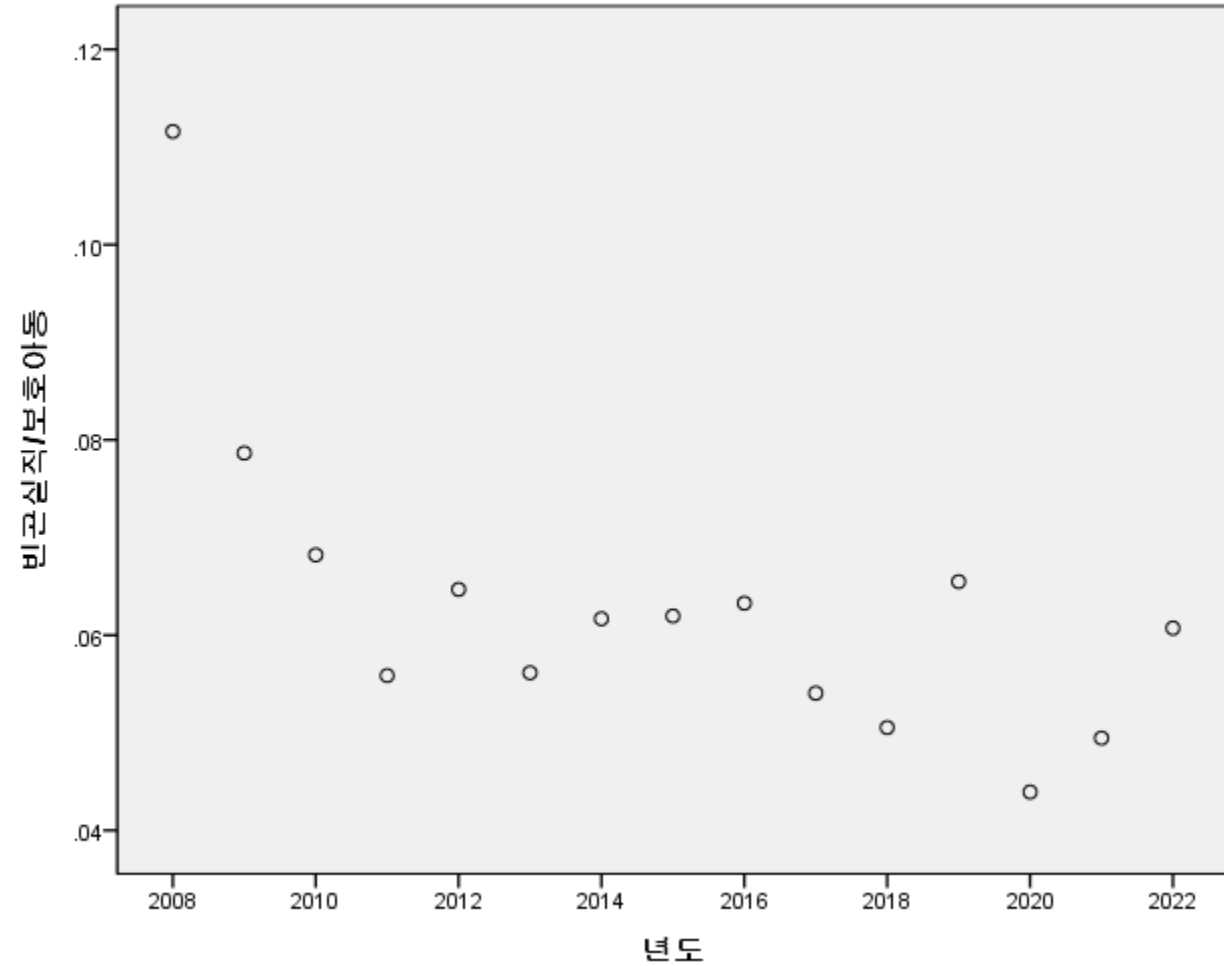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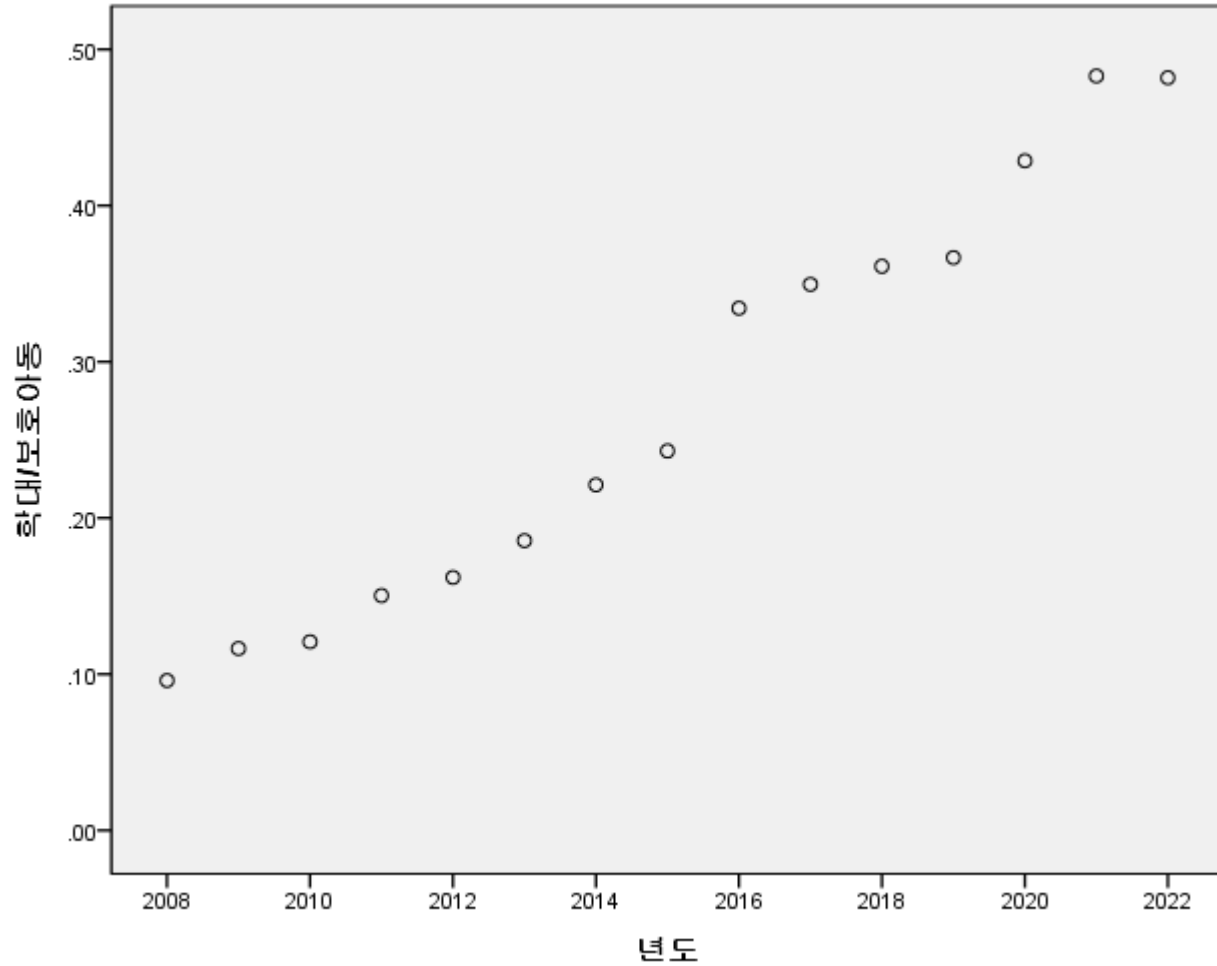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보호대상아동발생-귀가 및 연고자 인도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원인인가? 결과인가?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남	여	유기	미혼 부모· 혼외 자	미아	비행· 가출· 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교정시설 입소	부모 이혼 등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2,289	1,115	1,174	73	252	0	11	1,103	139	235	70	110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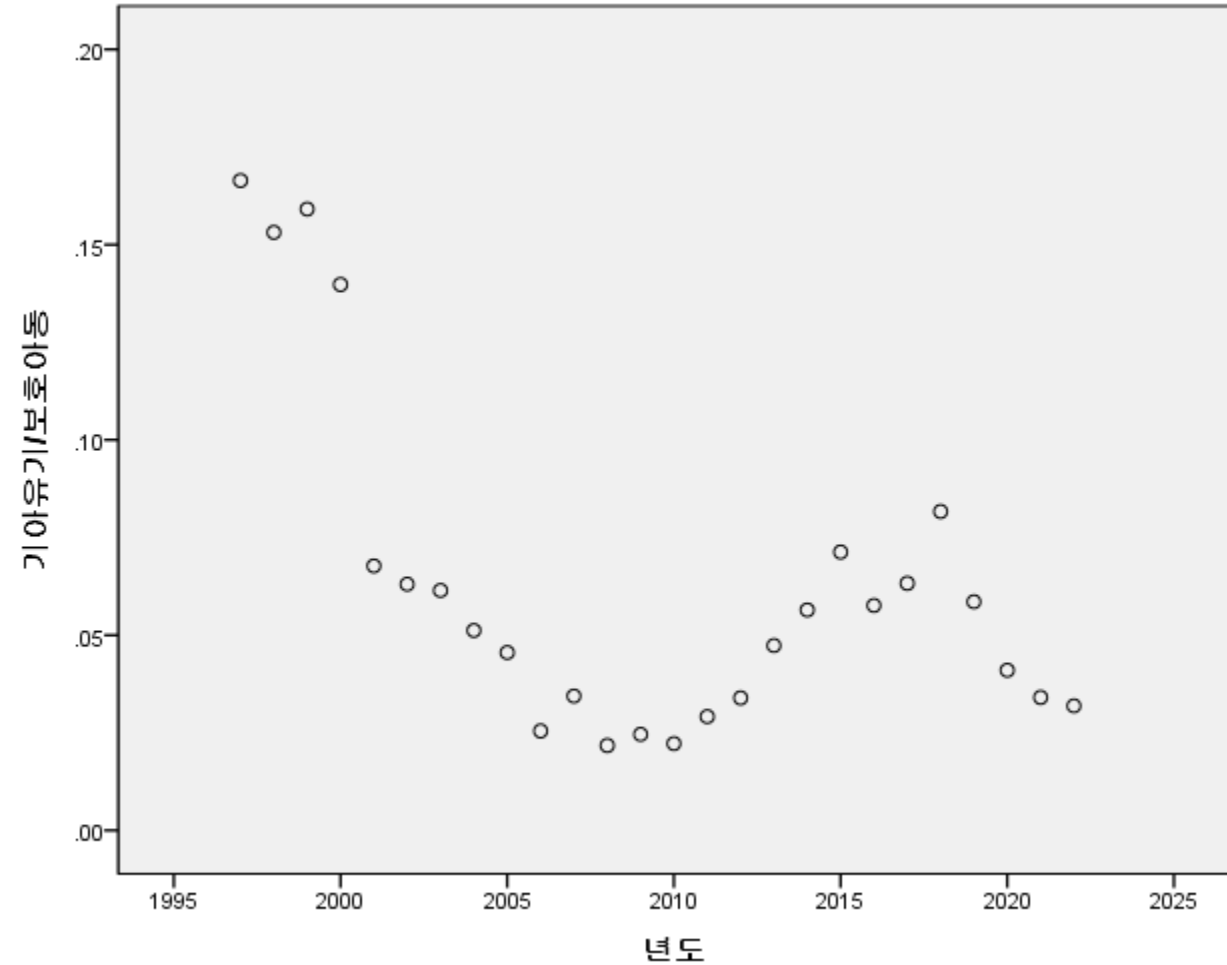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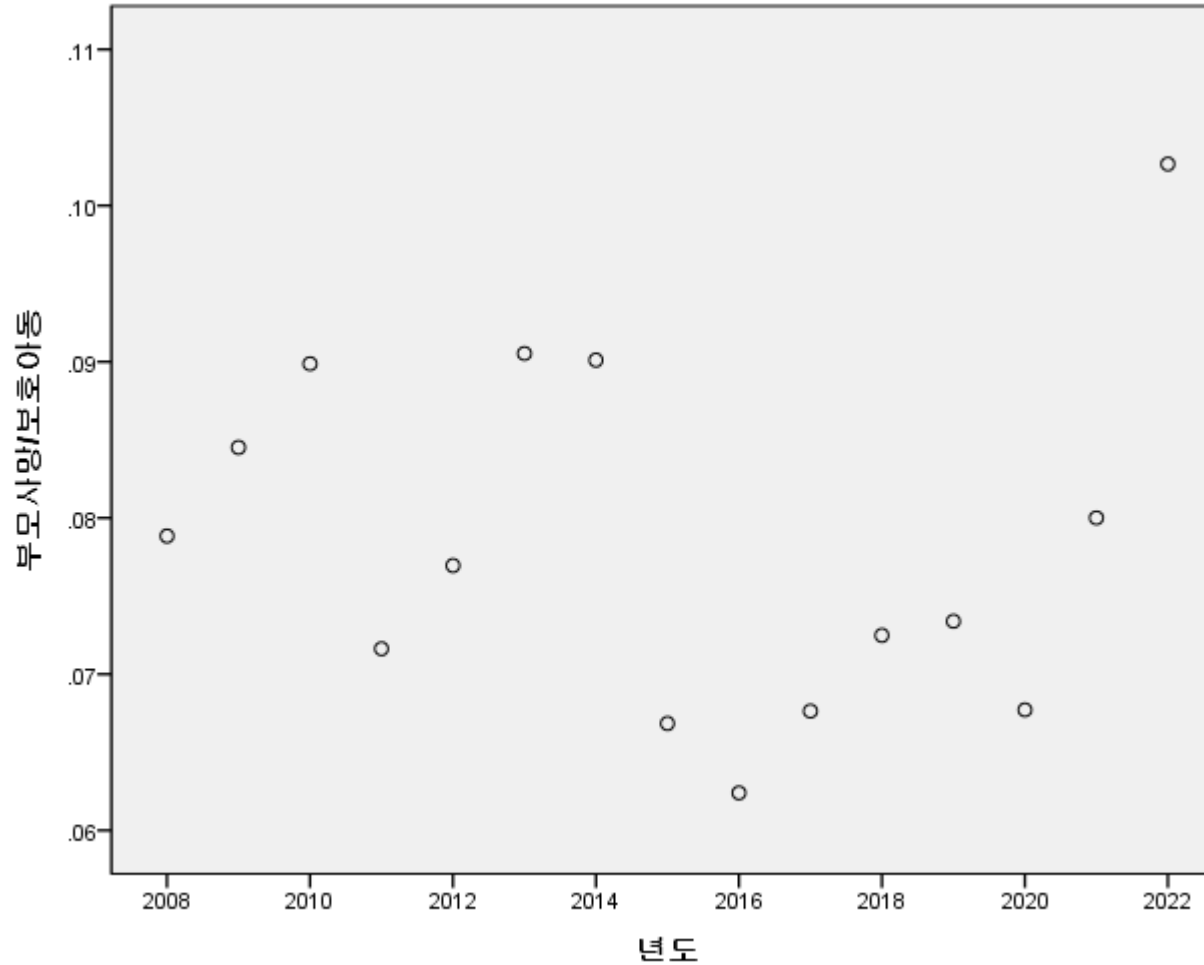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 "빈곤"에 주목: 스코틀랜드의 CARE REVIEW REPORT

- CARE SYSTEM 진입에도 사회적 기울기(social gradient)가 있음. 빈곤 가정일 수록 아동이 아동보호체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음
-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기준 이하의 서비스 제공에 직면하거나, 다른 지역보다 걷는 거리가 안전하지 않거나, 집이 비좁거나,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의지할 수 있는 지원 자원이 없는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원하는 부모가 될 수 없고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스코틀랜드의 보호 체계 검토 보고서)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 "빈곤"에 주목: 스코틀랜드의 CARE REVIEW REPORT

- 위기 상황에서 가족에게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몇몇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스코틀랜드는 care review에서 아동과 가족으로부터 재정 및 주거 지원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라고 지적함.
- 단기적으로는 빈곤의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족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존재를 해결하는 경제를 통해 가족의 재정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가치 있는 개입임.

3. 숫자3 –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

- "빈곤"에 주목: 스코틀랜드의 CARE REVIEW REPORT
- 가족들이 더 부당하게 낙인 찍힐까 봐 이러한 증거를 무시해서는 안 됨.
- 오히려 모든 아동이 사랑받고,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빈곤 문제와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함.

4. 숫자4: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 조치

(단위 : 명)

보호대상아동의 조치내용														일시보호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계	남	여	시설보호		가정형보호		
양육시설		자립지원 시설		보호치료 시설		공동생활 가정		기타		소계	남	여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비장애								장애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567		0		12		287		47		㉝	㉞	㉟	52		802		114		㊷	㊸	㊹	㊺			
540	27	0	0	12	0	272	15	30	17	968	474	494	52	0	772	30	114	0	408	203	205	361	20	26	1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결과표	<결과표>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 중·장기보호 조치내용 ~~~시설입소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삭제)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가정보호 ~~~소년소녀가정(삭제)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결과표> ●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 중·장기보호 조치내용 ~~~시설입소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가정보호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위탁 ● 일시보호 조치내용 ~~~시설보호 ~~~가정형보호	↓ - '중·장기보호' 및 '일시보호' 구분 작성이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일시보호' 내용을 '중·장기보호'와 분리하여 작성 및 제공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 2022년부터 중장기보호조치, 일시보호조치로 구분함
-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부터 중장기보호조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원가정보보호의 원칙에 어긋남. 모든 아동(백번 양보해서 대부분의 아동)은 기간이 3개월, 한번 연장해서 3개월 추가보호를 받는 일시보호(시설보호, 가정형 보호)조치되어야 함.
- 현재 중장기보호조치에서 양육상황점검 및 (보호조치) 재평가가 있지만 보호조치가 장기화를 의식할 필요 없음(신경 쓸 필요 없음).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 현재의 일시보호에는 몇가지 내용이 혼재

1) 접수 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거나 부족한 각 시·도는 「아동복지법」제15조 제5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의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 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 실정과 시설 여건이 적합한 시설을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전환

2)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일시보호: 즉각분리, 일시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보호) => 아동복지법 제15조 6항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 현재의 일시보호에는 몇가지 내용이 혼재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즉각분리 요건에 해당하는 6세 미만(미취학)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조치, 조사기간동안 아동이 보호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일시보호
 - 위기아동의 일시보호(3개월) 목적 달성시(원가정 복귀, 장기보호조치 등)까지 보호하고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시보호 연장(3개월 이내) 또는 장기보호 전환(전문, 일반가정위탁, 입양 등), 가정복귀 등 조치 결정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 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일시보호는 **즉각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조치** 혹은 즉각 분리 해당은 아니지만, **분리하여 보호 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또는 입소, 입양)를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뜻함.
- 이를 보면, 즉각 분리를 제외하고 다른 경우의 분리는 중장기보호를 전제하는 듯함. 이는 아동보호서비스의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원가족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등의 원칙에 어긋남. 중요하게는 영구성 원칙에도 어긋남. 중장기보호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함.

4. 숫자4 – 중장기보호조치 VS 일시보호조치

- 즉각 분리 사유이든 다른 분리 이유이든 **모든 분리는 원칙적으로 일시적(단기)이어야 함**. 보호아동현황보고의 통계 작성에서 일시보호, 중장기보호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 분리된 모든 아동은 일시보호조치 후(3개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3개월 추가 연장), 일정 보호기간(1년 혹은 2년)이 지난 장기 보호조치 중인 것으로 구분해야 함. **일정 보호기간 이상 보호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필수로 받도록 해야 함(양육상황 점검으로 충분하지 않음)**. 일단, 모든 아동복지시설은 일시보호시설이어야 함.

5. 다루지 못한 이야기

- 면접교섭서비스
- 원가족과의 관계 지원: 보호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 중간보호종료 아동: 원가정복귀, 전원 등
- 가정복귀프로그램: 분리 후 원가정 복귀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

5. 다루지 못한 이야기

- 가정복귀프로그램: 2024년 아동학대 대응업무매뉴얼
 - 보호종결을 위한 가정복귀 절차는 분리보호의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 **(필수적용)**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근거로 가정 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분리보호한 피해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아동학대행위자 여부 관계없음)이 가정복귀를 신청한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필수로 적용해야 함
 - **(축약적용)** 아동복지법 제15조에제6항에 따른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가정 복귀 절차를 적용하되 가정복귀프로그램을 축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선택적용)**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만 연고자 또는 가정위탁 또는 시설 보호 조치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② 청소년쉼터, 성폭력 쉼터, 장애인 쉼터 등에 보호조치된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선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정 복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2024).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중심으로 -

김혁(2020).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31권 4호, 75-102

김미숙(2011). 뉴질랜드의 아동사례관리 고찰. 국제 보건복지정책동향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대응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2024). 아동분야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고시(통계청 고시 제2023-227호)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4-89호)

최명민, 권자영, 김기덕(20167).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8(4), 225-246.

Dozier, M., Zeanah, C. H., Wallin, A. R., Shaffer, C. 2012. Institutional Care for Young Children: Review of Literature and Policy Implementa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6(1), pp. 1-25.

Foundations. (2023). Family Group Conferences. Implication for Policy & Practice.<https://foundations.org.uk/wp-content/uploads/2023/06/Family-Group-Conferencing-Implications-for-Policy-and-practice.pdf>

Scotland(2018). Independent care review the promise

같이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정책학회 발표자료

가정위탁 활성화의 쟁점과 과제

2024.05.31. 이주연

목 차

1. 가정위탁 활성화의 쟁점
2. 가정위탁 활성화의 과제
3. 아직 고민이 되는 지점

이 연구는 이주연, 이정은, 이상정, 임성은, 조정우, 김희진 (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의 결과를 담은 것입니다.

• 신규 가정위탁 아동 규모 및 추이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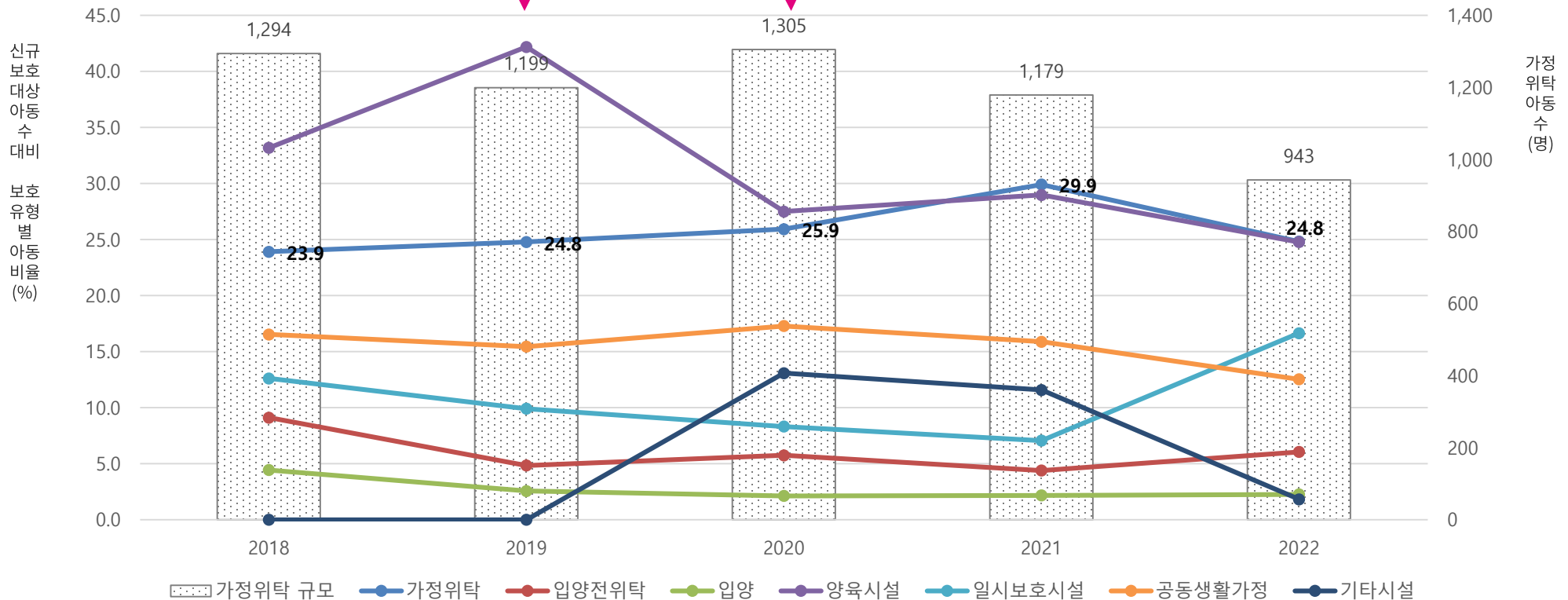
2020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6대 중점과제 - 24년 37%

2023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위탁부모/아동 지원

2009 유엔
아동대안양육
지침에 대한
결의안



•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세부 보호유형별 보호 비율 추이

연도	가정위탁				전체	가정	기타
	가정위탁	가정	가정	기타			
2008	43.3	4.3	3.2	50.7	42.6	6.6	38,597
2009	42.1	5.2	3.3	50.6	43.1	6.3	38,561
2010	41.5	5.6	3.3	50.5	43.0	6.5	38,011
2011	41.7	6.1	3.2	51.1	42.2	6.7	36,682
2012	42.3	7.0	3.5	52.8	41.7	5.4	34,736
2013	42.2	7.5	3.6	53.3	43.9	2.8	33,238
2014	41.0	7.9	3.6	52.5	43.9	3.6	32,775
2015	40.8	8.4	3.8	52.9	43.7	3.4	31,422
2016	41.2	9.1	4.1	54.4	42.7	2.9	30,223
2017	41.0	9.9	4.0	54.8	42.1	3.0	28,446
2018	41.3	10.7	4.1	56.0	41.4	2.5	26,887
2019	41.2	11.5	4.2	56.9	40.4	2.7	25,702
2020	41.6	12.6	4.0	58.2	39.9	2.0	24,896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인식

• (예비)위탁가정의 발굴 어려움

-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위탁가정에 부정적 시각
- 전국규모의 홍보 부족
- 비혈연 위탁가정 부족
- 전문위탁가정 부족

• 가정위탁 활성화 촉진 요인

- 위탁부모의 개인특성(사명감, 봉사정신, 연민)
- 위탁부모-아동 간의 유대관계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량
- (재위탁) 보람이 되는 위탁경험
- (위탁유지) 양육에 도움이 되는 급여·서비스
- (위탁유지) 사례관리자의 지지

쟁점1 가정위탁 규모 더딘 증가

• 위탁가정-아동 간 매칭 어려움

- 가정위탁 가능하더라도 보호까지 2-3개월 소요
→ 시설보호 신속 매칭 가능
-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초등고학년 이상 아동 등에 대한 (예비)위탁부모의 매칭 거절
- (예비)위탁부모의 선호도 반영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유대관계가 있는 위탁부모 발굴
-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 강화
- 양육에 도움이 되는 급여 및 서비스 강화

• 가정위탁의 성과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인식

-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주양육자의 존재감, 아동의 정서적 안정
- 시설보다 적은 사회적 낙인감
- 보호종료 이후 위탁가정과의 연결감과 안정감이 컸으나 시설아동은 자립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남(주해란 외 2022)

선행연구 결과

- 위탁아동은 시설보호아동 대비 자립지원서비스 등 정부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이용률도 낮은 편(이상정 외, 2017)
- 국외 가정위탁이 대규모 시설보호 대비 긍정적인 아동 발달성고를 보인데 비해(Sonuga-Barke et al., 2017; van Ijzendoorn et al., 2020) 국내 위탁아동이 공동생활가정 아동 대비 다소 낮은 성과(장혜진 외, 2014; 이상정 외, 2017)
- 국외에서도 잘 준비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위탁보호를 하게 될 경우, 위탁아동의 신체적·행동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 보고(Villodas, Litrownik, Newton, & Davis, 2016)



질적 개선을 위하여 점검할 영역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역별 격차

- 월30만원 이상(만7세 미만), 월40만원 이상(만7-13세)
월50만원 이상(만13세 이상)을 지급 권고

표 1.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

구분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단가			일시가정위탁 보호비	아동용품 구입비
	만7세미만	만7세~13세	만13세 이상		
서울	300	300	300	30/일	1,000
부산	300	300	300	30/일	1,000
대구	300	300	300	30/일	1,000
인천	300	400	400	30/일	1,000
광주	310	310	310	-	-
대전	310	310	310	-	-
울산	300	300	300	1,000/월	1,000
세종	300	400	500	-	-
경기	300	300	300	1,000/월	500
강원	180~300	180~400	180~500	-	1,000
충북	150~300	200~300	230~300	-	500~1,000
충남	260~360	260~360	260~360	-	1,000
전북	250	250	250	900/월	-
전남	300	300	300	-	1,000
경북	250	250	250	30/일	-
경남	150~300	150~400	150~500	-	500~1,000
제주	300	400	500	30/일	1,000

자료: 보건복지부(n.d.a),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비공개), 내부자료.

양육보조금 국비지원 필요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표 2. 2022년 충청남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개인당 월별 지원금액*	예산액
천안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260,000	650,000,000
공주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241,429	103,220,000 (101,400,000)
보령시	가정위탁양육비	200,000	79,700,000
아산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178,444	249,600,000 (224,840,000)
서산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250,000	195,000,000
논산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177,500	43,200,000 (42,600,000)
계룡시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120,000	27,000,000
당진시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	150,000	133,000,000
금산군	가정위탁양육지원(자체)	366,667	39,600,000 (38,400,000)
부여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276,603	97,200,000 (86,300,000)
청양군	가정위탁양육비지원	300,000	118,800,000
홍성군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120,000	97,600,000
예산군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200,000	142,840,000
태안군	가정위탁아동 지원	200,000	45,500,000
서천군	요보호아동지원	329,333	65,520,000 (59,280,000)

주 1) 개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www.lofin365.go.kr)의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자료에 입력된 사업개요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업하였음. 단, *표시가 있는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의 경우 사업개요에 개인당 월별 지원금액을 고지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업개요에 기재된 '관내 보호아동 수'를 결산액으로 나누어 월별 지원금액을 대략적으로 유추한 값으로 실제 지원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표시가 있는 천안시의 경우, '관내 보호아동 수'가 기재되어있지 않음에 따라 천안시의 홍보자료(<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633491663>)를 활용하여 월별지원금액을 제시함.
자료: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3),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2.12.31. 기준)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에서 2023. 10. 5. 인출, 시민의 천안(2023), 천안시,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https://blog.naver.com/fastcheonan/222633491663>에서 2023. 10. 11. 인출.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인식

현금급여

기초생활수급비, 양육보조금, 전문아동보호비(일시위탁보호비), 아동용품구입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치료비 등

현물급여

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보증금,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립관련 지원

10만원 이내 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학진학자금, 청년 전세임대주택, LH 임대주택 등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 시설보호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

- 시설은 후원금과 후원 연계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 용이한 편인데 비해 위탁가정은 후원금이나 후원서비스의 연계 지원이 어려운 편
- 중고등학령기 교육비, 물품구입이나 피복비(일시적 보호로 연령대가 다른 아동이 배치되는 경우) 등 부족
- 드림스타트 이용 제한(조기개입, 발달지원 서비스 연계 어려움)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 충분하지 않은 사례관리서비스

- 사례관리와 양육점검의 빈도가 충분하지 않음(20년까지 연 1회, 21-22년 연2회, 23년 분기별 1회 사례관리)
- 사례관리 인력의 부족과 잦은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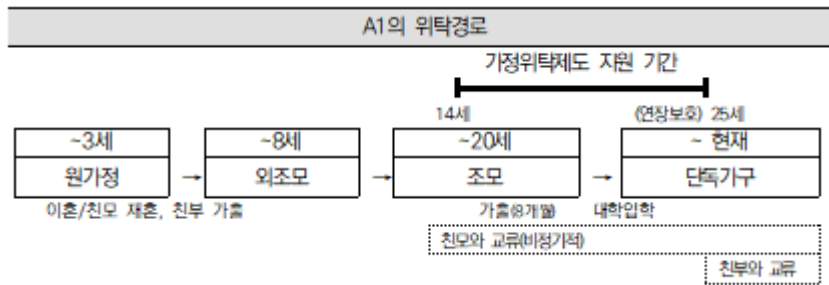
→ 미국사례: 위탁조치 후 약2년 간 월 1회 방문 집중사례관리 (위탁생
할 점검 및 원가정복귀 모니터링) → 원가정복귀 or 영구적 조치

가정위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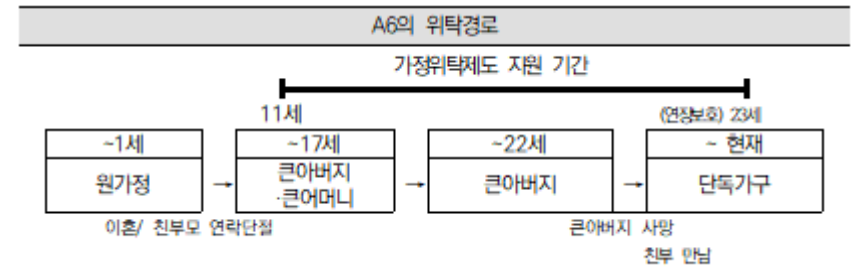
전국 18개소
종사자 225명
상담원 1인당 평균 84명 아동
(69가정)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

가정위탁이 되었다는 사실의 미인지 경험사례



자료: 이주연 외(2023) p.147



자료: 이주연 외(2023) p.152

• 위탁아동이 경험하였던 위기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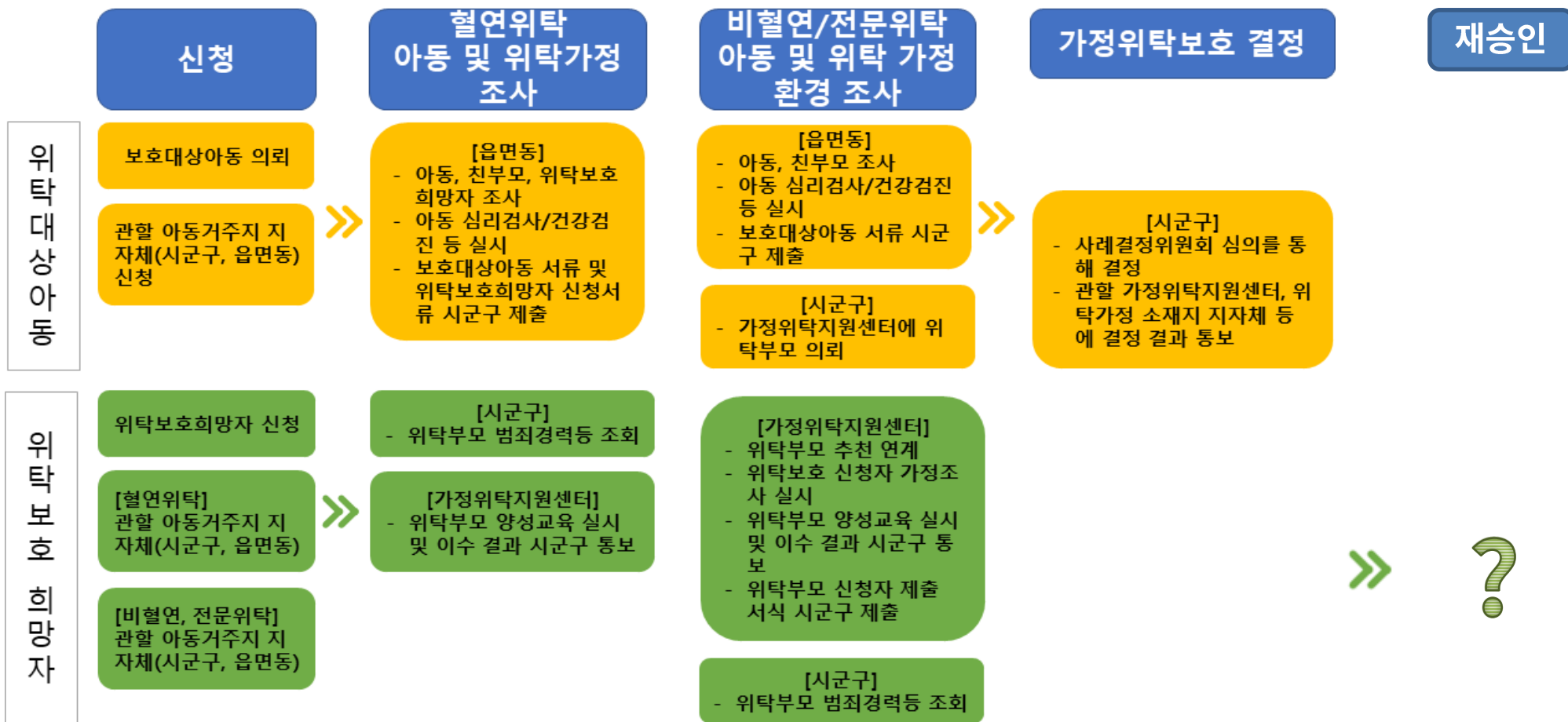
구분	주된 위기	대응
A1(대리)	경제적 어려움 지속, 조모의 일 돕기	청소년기에 8개월간 가출, 14세부터 위탁되었으나 미인지
A2(대리)	초등학교 시기 우울증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상담서비스, 가정위탁 상담사 만난 적 없음.
A3(대리)	위탁부모 별거에 따른 위탁모의 잦은 경제적 어려움	위탁모를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 A3의 임대주택에 친지가 거주함에 따라 별도 거주지로 독립 (장기간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A4(대리, 친인척)	위탁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탁불가, 두번째 위탁부(외삼촌)의 사망, 세번째 위탁보호자인 오빠와의 갈등	대리위탁이 해제되고 친인척위탁(외삼촌)으로 이동, 친인척위탁이 해제되고 위탁자를 오빠로 변경, 보호종료 이후 독립함
A5(친인척)	위탁도중 위탁부의 사망으로 경제적 어려움	친부와 잠시 동거하였으나 친부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이별
A6(친인척)	위탁부(큰아버지)와 위탁모(큰어머니)의 별거	11세부터 위탁되었으나 미인지(자립관련 급여/서비스 미인지로 대학 휴학)
A7(친인척, 일반)	위탁가구원(친인척)과의 갈등, 위탁모(일반위탁)의 출산	위탁의 해제 / 위탁가정 인근 별도의 거주지에서 생활
A8(친인척, 시설)	위탁모 및 위탁모의 자녀(고종사촌)와의 갈등	갈등이 심화되어 가출, 시설로 이동, 위탁가정과 연락하지 않음
A9(일반)	위탁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사, 압류)	경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독립하였으며 연락하지 않음
A10(일반)	위탁부의 사망으로 인한 위탁모의 건강악화	위탁모를 간병
A11(일반)	위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내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함

자료: 이주연 외(2023) p.173 <표 4-19>를 참고하여 인터뷰 자료 재분석 및 수정

장기간의 위탁기간 동안 경험하는 위기(경제적 어려움, 위탁부모와의 갈등, 사망, 가족원과의 갈등, 위탁부모의 별거, 위탁모의 출산, 위탁부모의 건강악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의 내실화 필요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 위탁가정의 재승인 절차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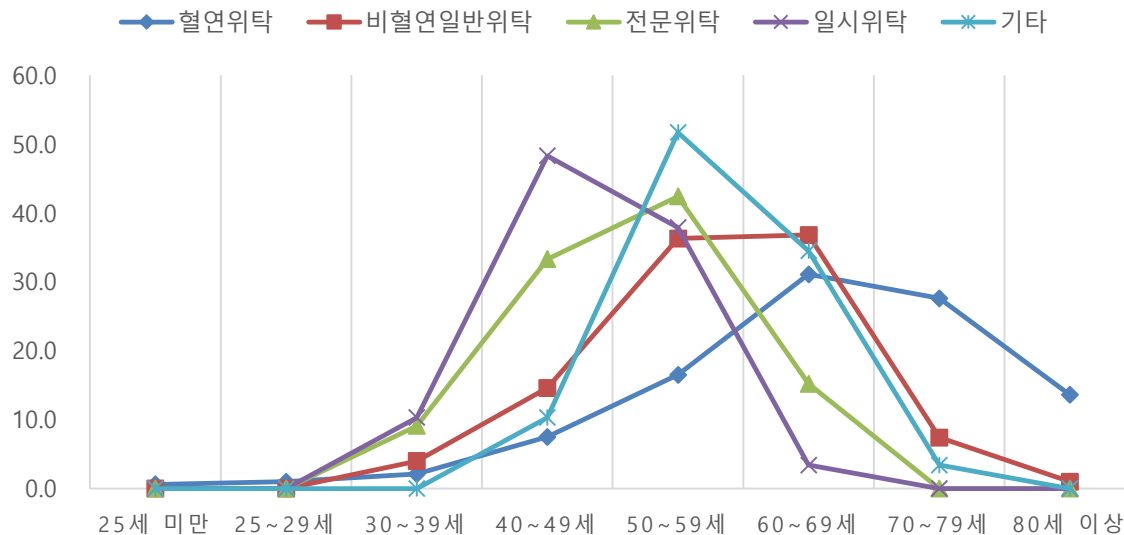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표 3. 2022년 기준 가정위탁 유형에 따른 평균 위탁기간: 보호종결 아동기준

구분	혈연위탁	비혈연 일반위탁	전문위탁	일시위탁	전체 가정위탁
평균 위탁기간	9년1개월	7년8개월	1년8개월	9개월	8년7개월
아동 수	1,428명	107명	7명	39명	1,581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81.

그림 1. 2021년 기준 위탁부모 연령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p.110

- 평균 위탁기간의 장기화, 고령 위탁부모의 비율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의 내실화와 더불어 위탁가정의 재승인 또한 절차화 될 필요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 전문가정위탁의 전문성

- 전문위탁보호자의 자격 및 교육

○ 일반위탁보호자 자격
 ① 친인척보호 외 가정위탁보호경험이 3년 이상
 ②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관련 학과 졸업하여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① 양성교육: 주양육자 5시간 이상 교육(일반위탁과 동일) + 15시간 전문위탁 교육
 ② 매년 5시간 이상 교육

표 4. 2021년 기준 신규 위탁아동의 특성 분포 - 전문위탁가정 신규배치아동 분포와 비교

구분	계	장애여부		학대여부		위탁아동 연령					
		없음	있음	없음	있음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신규위탁아동 전체	1,333	1,302	31	1,190	143	184	209	210	240	277	213
	100	97.7	2.3	89.3	10.7	13.8	15.7	15.8	18	20.8	16
전문위탁아동	99	89	9	51	41	47	16	6	12	9	2
	100	90.2	9.8	55.4	44.6	51.1	17.4	6.5	13	9.8	2.2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 p.38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인식

- 중증장애아동의 전문위탁가정 보호 어려움 -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의뢰
- 학대피해아동 중 초등 고학년 이상 아동의 보호를 꺼리는 전문위탁가정

- 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의 영구성 고려

[쟁점3 부모보호로의 연계성 마련]

가정위탁
보호조치



(미국사례) 월1회 방문 사례관리

아동의 안전, 복지, 원가정복귀 가능성 적극 지원

영구적 조치

약 2년



법원 판결

원가정 복귀
입양

(위탁보호자에 의한) 후견보호

[쟁점3 부모보호로의 연계성 마련]

• 원가정복귀 어려움

사실 지금 현재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침을 보면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의 복귀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지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장기 보호가 더 많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가정위탁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활성화가 될수록 친부모의 책임감은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거기에 맡기는 친부모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가 돼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탁가정과 아동과 가정형 보호에 대한 지원은 되나 **사실 원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나 개입이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저희 지침상에도 필수적이지 않고, 평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자체가 열심히 친부모를 자극해서 빨리 애를 데려가세요. 하시는 것도 아니고...(실무자 인터뷰, 이주연 외 2023)

실무자와 위탁부모의 인식

-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업무지침 상 원가정복귀 지원 구체적 역할이 없음
- 연락이 두절된 친부모
- 변하지 않는 친부모
- 원가정 복귀 시 자립지원대상에서 제외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

- 장기간 위탁아동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친부모
- 성급한 원가정 복귀는 위탁아동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김
- 친부모가 원가정의 환경을 준비하지 못함 → 원가정 복귀 좌절 혹은 복귀 후 더 큰 어려움 경험 → 다른 가정위탁이나 시설로 표류 흐름

[쟁점3 부모보호로의 연계성 마련]

• 입양은 별도의 체계

- 입양전위탁은 입양기관에서 관할(선발, 교육, 승인, 관리 등)
- 입양대상아동 중 입양전위탁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
- 2021년 기준 위탁종결아동 중, 입양으로 종결된 비율은 0.6%에 불과(1,581명 중 10명)

실무자의 인식

- 가정위탁 → 입양 유인 부족

위탁가정에서 위탁아동을 보호하다가 입양하는 경우 위탁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종료되므로 위탁유지를 선택

자립준비청년의 가정위탁 경험

- 11명의 위탁경험이 있는 청년 중 위탁기간 내에 친부모와 재회 경험이 있는 청년은 7명

- 친부모와 재결합 시도 3명 중 원가정 복귀 1명

- 위탁가정에서 입양 시도하였으나, 친부모의 반대로 입양이나 원가정복귀 안된 사례

[쟁점4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강화]

• 친족보호과 가정위탁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2에 근거하여 보호대상아동을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친족보호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
- 혈연위탁보호자 자격요건인 소득, 연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공식 친족보호로 보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만이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대상
- 친족보호가 공식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기 전 일시적 보호조치로 활용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이나 아동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므로, 보호대상아동이 비공식 친족보호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지원은 (위탁아동과 유사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음.

쟁점4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강화

• 탈시설 선언·지원을 통한 가정보호 강화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기반 보호는 단순히 아동을 시설에서 가정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재구조화와 서비스 역량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Browne et al., 2007).

- 탈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언이 가정보호의 확대를 견인

→ 불가리아 등 사례: EU의 다수 국가는 탈시설 전략이 마련되면서, 가정위탁 및 입양 관련 법 개정, 아동보호체계 개편 등이 단행됨. 특히 ‘거주시설 폐지’에 대한 선언과 정책적 시행이 중요 - ‘시설 형태의 보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명하는 것은 가정보호로 전환하는 기로에 매우 중요한 역할

→ 일본 사례: 국가가 가정양육우선 원칙을 설정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설 신규입소 중지 선언하고 ‘3세 미만은 5년 이내,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7년 이내 각 가정위탁율 75% 이상,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년 이내 가정위탁율 50% 이상’ 등 구체적인 가정양육 우선원칙의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의 구체적 지향점 설정함.

- 시설보호와 가정보호, 특히 가정형보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이봉주 외, 2022).

[쟁점1 가정위탁 규모 더딘 증가]

• 친인척 위탁부모의 범위 확대 필요

- 기존 유대관계나 친밀감이 있는 가까운 이웃, 가족의 친구 등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대
→ 미국사례 친인척 위탁에 넓은 범위의 기존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을 파악(Kinship navigator)하여 지원 가능

• 신규 위탁가정 발굴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마련

- 대중적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
-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관련 실무자, 이용자 및 후원자 등 기존 전문성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집단, 아동 보호 및 교육기관 등 아동 양육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 가정위탁의 책정 및 배치절차의 소요시간 감소 방안 마련

- 가정위탁 책정 및 배치기간의 장기화로 시설로 배치될 수 있는 기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친족보호-가정위탁의 연계성을 높이고, 확장된 범위의 친인척(지인, 이웃 등) 가정위탁을 일시보호 시 활용

[쟁점2 가정위탁 질 제고 필요]

• 사례관리의 강화와 질 제고

- 위탁초기에 집중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원가정 복귀의 기회를 높이고, 위탁기간동안 위탁가정이 경험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필요
- 이를 위하여 사례관리인력을 증원할 필요

•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내실화

-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문제행동 아동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가정위탁의 자격기준을 차등적으로 설계하고 전문 양성교육을 통하여 치료적 보호를 제공할 필요
- 치료적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강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의 확대 필요

• 정부지원 및 서비스 강화

- 양육보조금의 국비 지원
- 위탁아동 및 가정 대상 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
- 위탁아동 대상 드림스타트 제공
- 위탁보호자-아동 간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여행지원, 가족상담, 의사소통기술, 자조모임 등) 강화
- 위탁보호자 사례중심, 실천중심의 양육기술교육 강화 및 휴식지원 제공
- 심리지원 서비스, 교육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 강화

쟁점3 부모보호로의 연계성 마련

• 원가정·친부모 대상 개입의 강화

- 친부모의 양육의지 제고
- 원가정의 양육환경 마련 지원(주거, 친부모의 취업활동, 양육기술, 가족구성원 간 의사소통 기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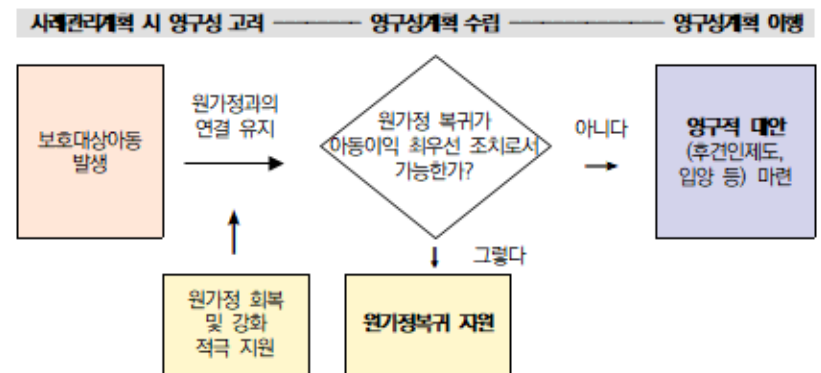
• 아동보호의 영구성에 기반한 가정보호 활성화 필요

- 가정위탁을 일시적 보호로 간주 사례관리 초기부터 영구성 계획 고려
- 가정위탁 초기 원가정과 연결강화 및 집중적 원가정 지원
-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영구적 보호 대안 마련(후견인 제도, 입양 등)

• 가정위탁-입양 체계 간 연계성 강화

- 입양전위탁을 공공 가정위탁 체계로 편입
- 가정위탁에서 입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 마련

그림 2. 아동보호의 영구성 계획 개념도



자료: 이주연 외(2023) p.305

쟁점4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강화

• 정부의 탈시설 선언

- 탈시설의 방식(대상 연령, 소요기간 등) 등을 제시할 필요
- 과도기 시설보호-가정보호 병행 시, 가정기반보호(가정위탁)와 부모보호의 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 가정보호의 개념에 기반한 가정기반보호(가정위탁) 추진

그림 3. 가정보호의 스펙트럼과 구성요소

구성요소	부모보호 ----- 가정기반보호 ----- 시설보호				
	parental care		family-based care		residential care
					family-like care
혈연관계	원가정 보호	입양	혈연 가정위탁	친족돌봄	
법적인 부모			+	+	
가정의 정서적 환경			가정위탁	친족돌봄	
가정의 물리적 환경					소규모 그룹홈
					대규모 시설

자료: 이주연 외(2023) p.24

그림 4. 가정보호 개념 정의

구분	가정보호		시설보호	
	부모보호	가정기반보호	가정같은 보호	시설보호
원가정보호	○			
입양	○			
가정위탁		○		
친족돌봄		○		
소규모 그룹홈			○	
그룹홈				○
대규모 시설				○

자료: 이주연 외(2023) p.302

- 가정위탁의 양이냐? 가정위탁의 질이냐?
- 위탁자격이 되지 않는 친족보호는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가?
 - 친족보호를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면(양육보조+자립), 혈연위탁가정의 자격을 왜? 확인하는가?
 - 친족보호를 가정위탁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면,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빈곤/방임 아동의 지원은?
- 위탁가정에서 기피하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유인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가?
- 유급 위탁가정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각년도). 각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n.d.a). 2022년 시도별 가정위탁사업 예산지원 단가(비공개, 내부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2023) 세부사업별 세출현황(2022.12.31. 기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1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시민의 천안(2023). 천안시,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아동 지원강화
이봉주·박정민·김선숙·이재윤·백아름·김선영. (202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정·강현아·노충래·우석진·전종설·정익중. (2017). 가정외 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3), 97-119.
이주연·이정은·이상정·임성은·조정우·김희진. (202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장혜진·최은희·윤혜미. (2014). 가정 외 보호유형에 따른 보호제공자와의 유대관계가 아동의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25-50.
주해란·길건혁이예진·안태구. (2022).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성장 환경에 따른 정서적 경험과 지원정책 비교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0), 141-176.
Browne K (2009) *The risk of harm to young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London*: Save the Children UK.
Sonuga-Barke, E. J., Kennedy, M., Kumsta, R., Knights, N., Golm, D., Rutter, M., ... Kreppner, J. (2017). Child-to-adult neurodevelopmental and mental health trajectories after early life deprivation: The young adult follow-up of the longitudinal English and Romanian Adoptees study. *Lancet*, 389, 1539–1548.
van IJzendoorn, M. H., Bakermans-Kranenburg, M. J., Coughlan, B., & Reijman, S. (2020). Annual research review: Umbrella synthesis of meta-analyses on child maltreatment antecedents and intervention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61(3), 272-290.
Villodas, M. T., Litrownik, A. J., Newton, R. R., & Davis, I. P. (2016). Long-term placement trajectories of children who were maltreated and entered the child welfare system at an early age: Consequences for physical and behavioral well-being.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1(1), 46-54.

감사합니다 :)

〈한국사회정책학회 2024 춘계학술대회〉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2024.5.31.

임성은 부연구위원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

목차

CHAPTER.1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 논의의 배경

- 1.1 · 보호대상아동 주요 특성 변화
- 1.2 · 아동정책환경 변화



CHAPTER.2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주요 쟁점

- 2.1 · 주요 쟁점
- 2.2 · 선행연구 시사점



CHAPTER.3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과 과제

- 3.1 · 기능 전환방향성
- 3.2 · 시설유형별 기능 전환(안)
- 3.3 · 기타논의사항



1. _____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 논의의 배경



1.1 보호대상아동 주요 특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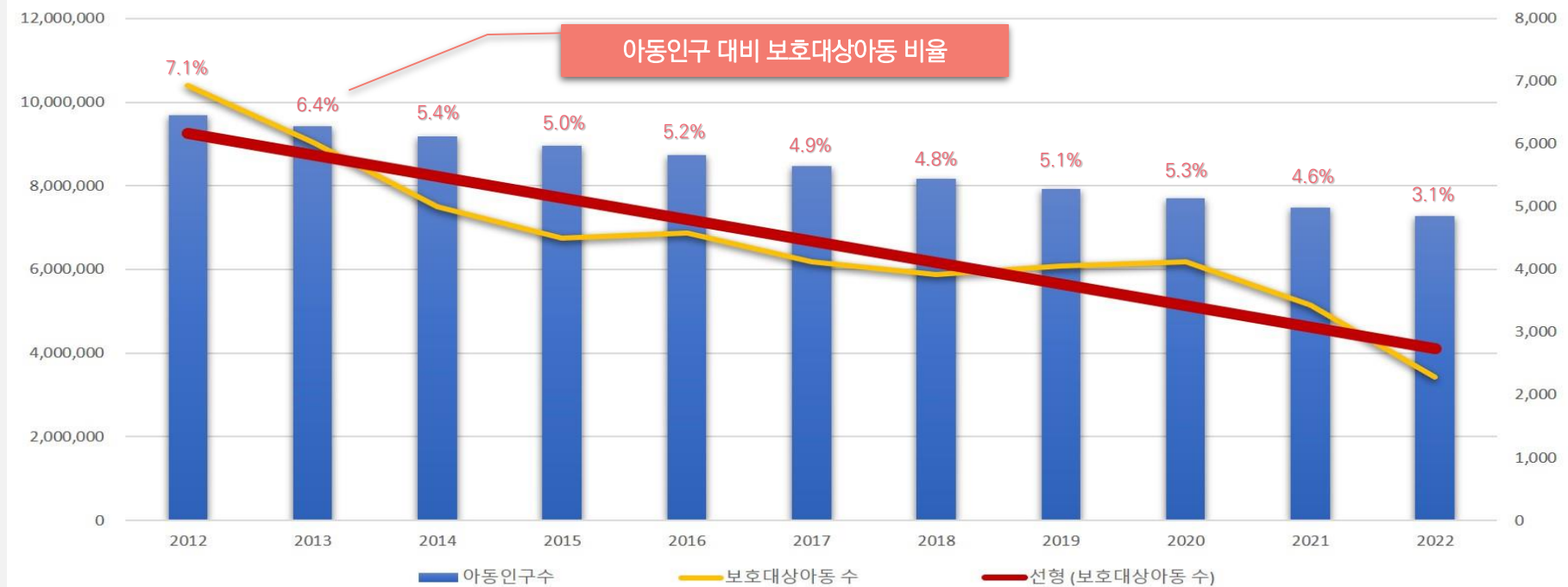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수 동반 감소'

- 전체 인구 중 아동인구비율: 49%(1970년대) → 25%(2000년대) → 10%대 지속(2010년대 이후)

※ 최근 3년간 아동인구비율 변화: 14.9%(2020년) → 14.5%(2021년) → 14.1%(2022년)

- 아동인구 대비 보호대상아동의 비율: 7.1%(2012년) → 3.1%(2022년)

보호대상아동(2012~2022)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아동 제외

출처: 1)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연도; 2)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작성기준년도 익년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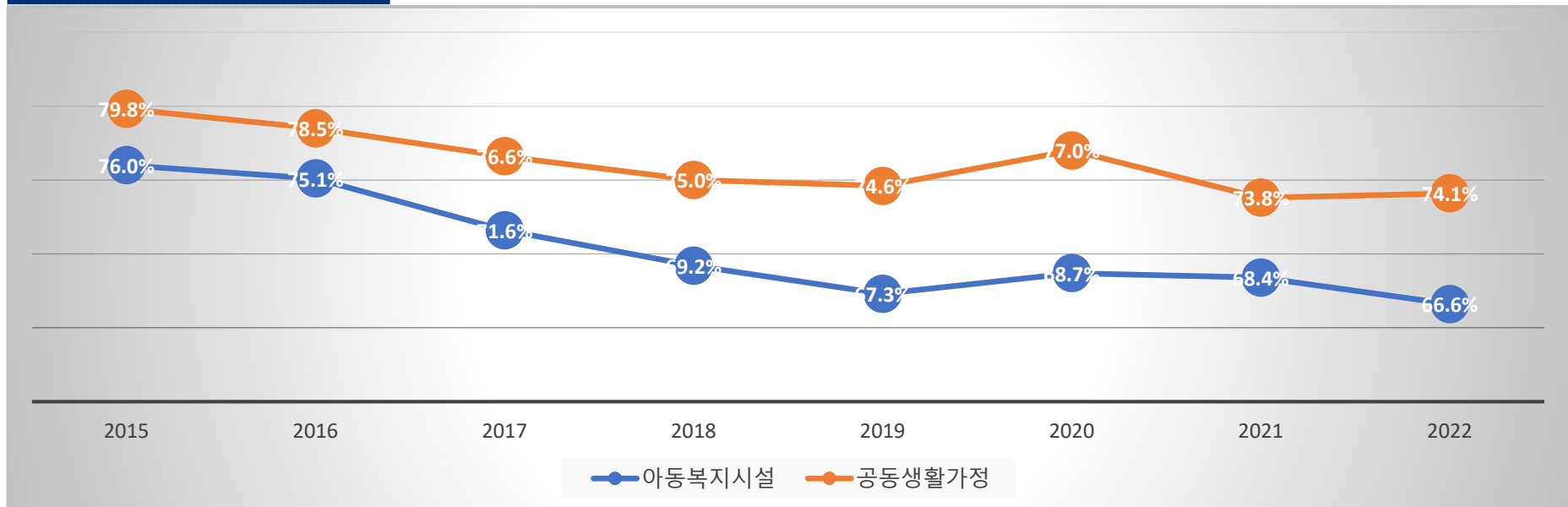
1.1 보호대상아동 주요 특성 변화

➡ 보호대상아동 감소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정원 충족률 감소'

- **아동복지시설**: 76.0%(2015년) → 67.3%(2019년) → 68.7%(2020년) → 66.6%(2022년) **70% 미만 수준**
- **공동생활가정**: 79.8%(2015년) → 74.6%(2019년) → 77.0%(2020년) → 74.1%(2022년)

➡ 보호대상아동 감소: 탈시설, 소규모 인원 보호, 아동 1인 중심 가정보호로 전환 필요·가능함을 시사

정원 충족률(2015~2022)



주: 1) 각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2)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3) 공동생활가정: 일반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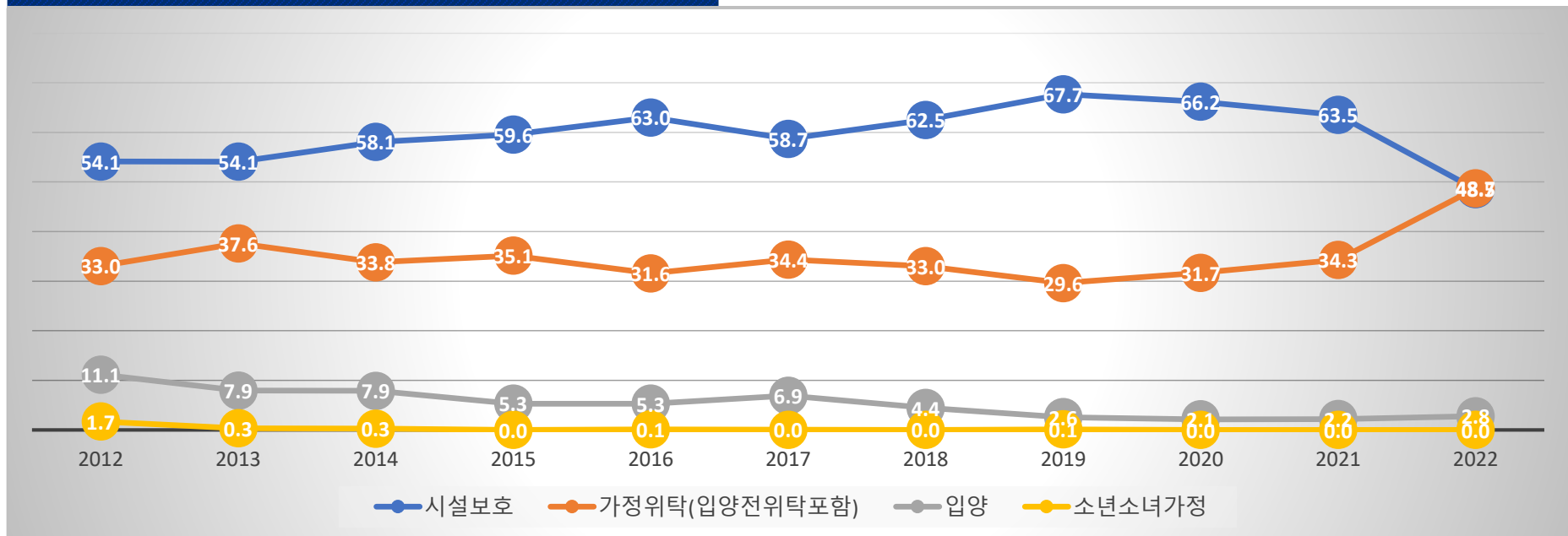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연도별 아동복지(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1.1 보호대상아동 주요 특성 변화

■ 시설보호 vs. 가정위탁

- 시설보호를 받는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다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
-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며 정체하다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
※ 2022년: 시설보호 48.5%, 가정위탁(입양전위탁포함) 48.7%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중 입양은 가장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나, 2022년(2.8%) 전년 대비 증가

보호조치 현황(2012~2022)



주: 2022년의 경우,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일시보호 중인 408명을 제외한 1,881명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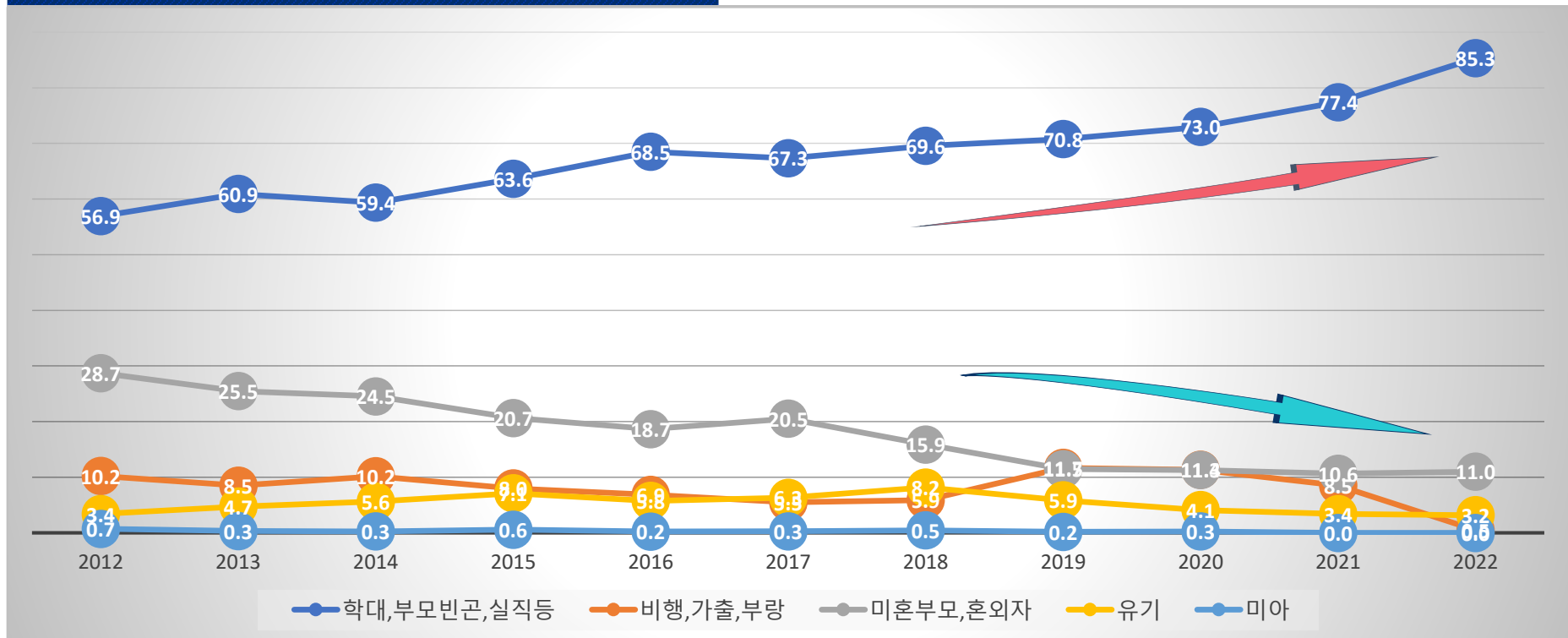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조치현황, 각 연도.

1.1 보호대상아동 주요 특성 변화

▶ ‘학대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증가

- 보호조치 발생원인 중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증가’
- ‘미혼부모나 혼외출산’을 통한 보호대상아동 ‘감소’

보호조치 아동의 발생원인(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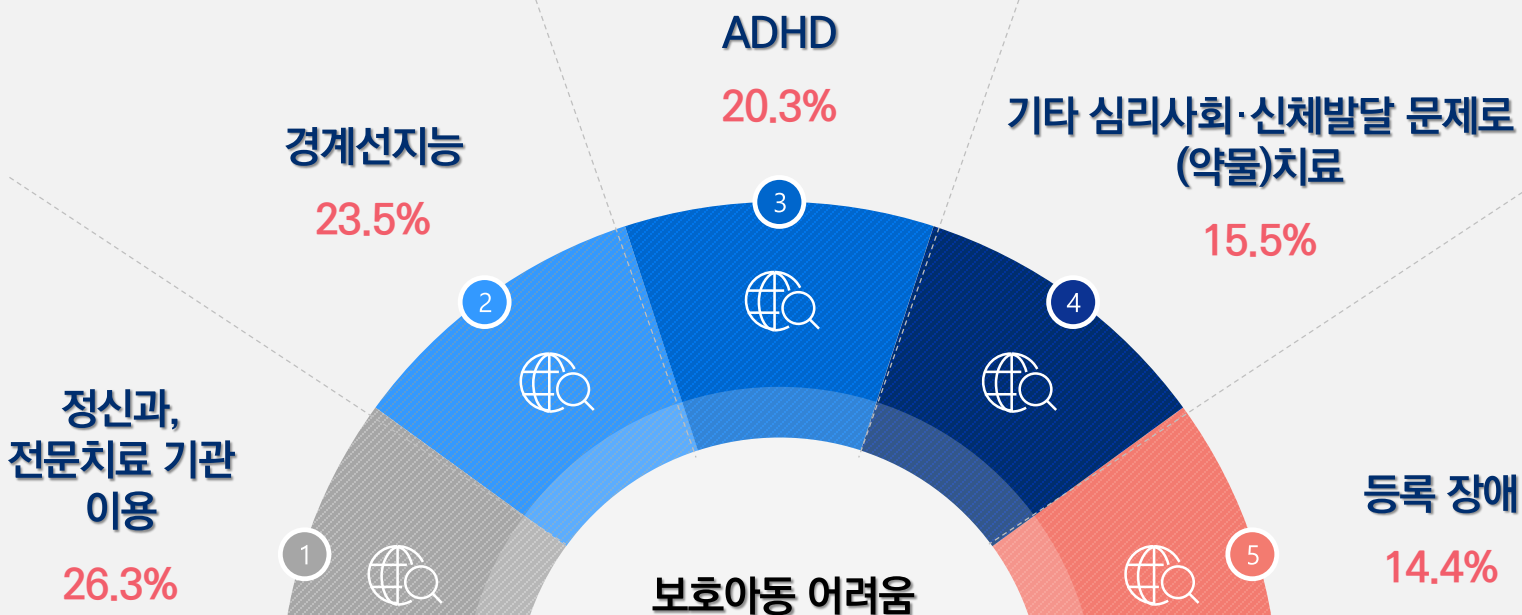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각 연도.

1.1 보호대상아동 주요 특성 변화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 증가

- 2023년 기준, 총 171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비율: 평균 **62.3%**
- 정신과 및 전문 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26.3%

보호아동이 겪는 어려움(2023)



1.2 아동정책환경 변화

‘민간 중심 아동복지체계’,

‘대규모 시설 위주 보호’에 대한 문제 제기



1960 이전

- 전후 전쟁고아 중심의 해외원조에 기반한 시설보호
- 해외입양 위주로 아동보호체계 형성



1960년~

- 아동복지법 제정(1962) ⇒ 아동복지법 제정(1982)
-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비준(1991)
- 민간기관, 시설보호 중심 아동복지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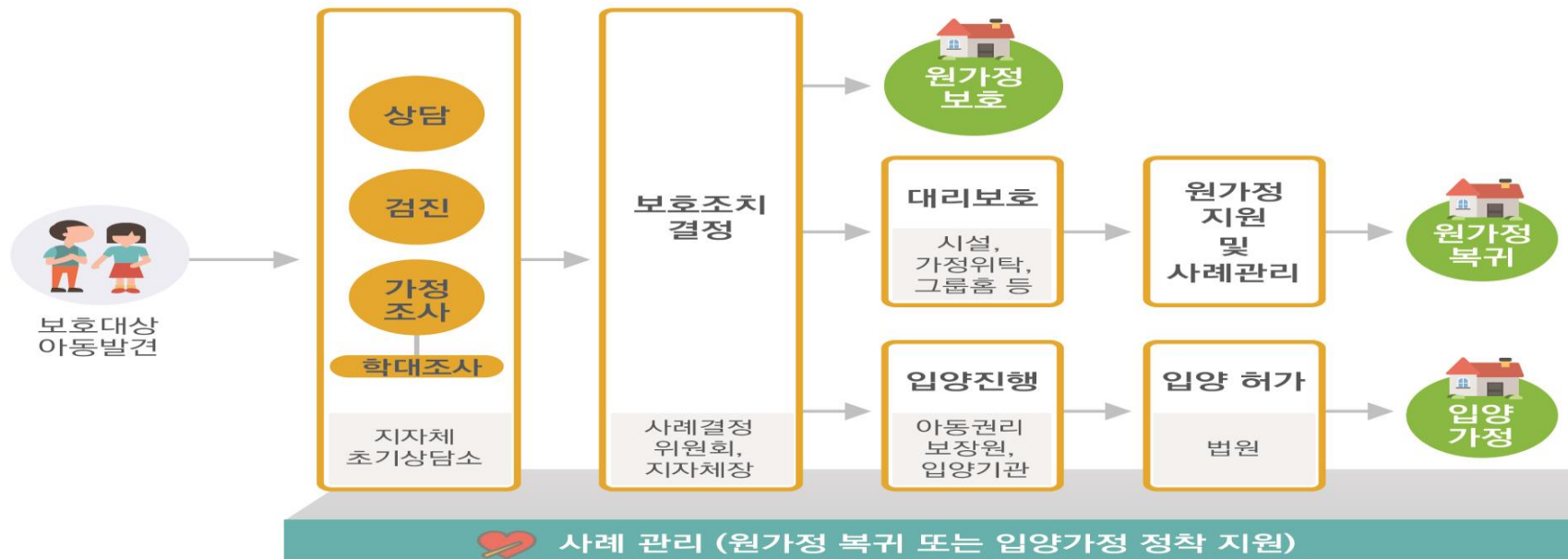
최근 10년

- 아동보호체계 내 아동 권리 증진 필요성 부각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미흡 지적

1.2 아동정책환경 변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정책(19)의 추진방향으로 설정

-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 전문 가정위탁 도입 및 가정위탁 지원 강화
- 변화된 아동 특성에 맞도록 양육시설 기능 전문화, 다양화, 개방화, 소규모화 유도



1.2 아동정책환경 변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 활성화”

▶ 가정형 위탁 중심 아동보호 활성화

- 친족 중심 가정위탁 탈피, 가정형 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 추가 양성 추진
- 신규위탁가정 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 영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및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강화

▶ 아동양육시설 지원방식 개선

- 단순 시설보호에서 필요한 유형별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원
- 1인 1실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아동양육시설이 치료지원형으로 전환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1.2 아동정책환경 변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 국정과제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제시

비전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	
목표	◆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발달·성장기회 보장 ◆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다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아동의 꿈과 희망, 의사를 존중하는 아동정책 추진기반 마련	
3대 추진 분야 · 10개 주요 과제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1. 아동기 집중 투자 2. 아동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3.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격차 해소 4. 촘촘한 돌봄과 다양한 활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1. 원가정 지원 강화 2. 아동보호체계 혁신  3. 두터운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4.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1. 아동 참여와 표현의 기회 확대 2. 아동정책 거버넌스 강화

1.2 아동정책환경 변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 아동보호체계 혁신

▶ 아동친화적 성장환경 마련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확충(3 → 4명), 심리정서 지원·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우선 지원, **치료실·놀이실** 확대 설치 등 **기능보강** 지원 확대

▶ 양육·자립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 **신규**

- (아동양육시설) **아동 특성별 특화**, 지역 내 가정형 보호 시설·기관 관리·지원 등 **전문화** 추진
 ※ '아동양육시설 기능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분석 후 기능전환 모델 제시
- (자립지원 내실화) 개별 아동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매뉴얼 개편 및 체험형 콘텐츠 확대

▶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신규**

- 아동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 정비
- **양육시설 기능전환·소규모화** 및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등 10년 이상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방향 제시, 현장·당사자 의견 수렴

2.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주요 쟁점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1 주요 쟁점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및 기능’

대부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전환에 초점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 제공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서비스 등 제공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보호·치료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 지원

2.1 주요 쟁점

▶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두 시설은 단기 보호 목적임에도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되지 않음
 - (아동일시보호시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부재, (아동보호치료시설)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북, 제주에 부재
- 심리·정서지원이 심각하게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응에 한계 존재
- 특히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가’목의 「소년법」상 6호 처분 아동 대상의 복지와 교정 기능과 ‘나’목의 **정서·행동 장애 혹은 학대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전문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현재는 후자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

▶ 아동양육시설

- 가정형 거주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획일적 통제 하에서 대규모 인원을 보호하는 집단생활시설 형태의 보호방식 유지
- 개별 아동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보호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낙인의 문제

▶ 공동생활가정

- 일반그룹홈과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구분되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시보호시설의 역할 수행
-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회계 투명성, 운영의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한계 존재

▶ 자립지원시설

-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이상정 외, 2020)에 의하면, 자립준비청년의 47.9%(양육시설 퇴소 아동은 64%)가 공공임대나 전세임대 같은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 자립지원시설은 5% 미만으로 수요가 낮음

2.1 주요 쟁점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합의 필요** (임성은 외, 2019)
 - 용어 혼용: 아동복지시설 기능의 전환, 개편, 다각화, 다기능화, 전문화, 특성화 등 다양하게 사용
 - 최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 개념은 소규모화, 탈시설로 확대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을 시설 존속의 대응 방안으로 인식** (이봉주 외, 2022)
 - 탈시설 추진,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 상황에서 시설의 기능 전환과 전문화를 현존하는 시설의 존속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인식
 - 오랜 기간 시설 기능 전환이나 전문화 등의 논의와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거나 형식적 측면에서 수행된 한계

- 아동복지시설 존속(시설보호)의 필요성 여전히 존재**
 - 가정위탁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보호에 대한 의존도와 필요도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 시설이 치료 목적 또는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 보호 목적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존재할 이유 있음 (이봉주 외, 2022)

단순아동보호기능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욕구에 대응

▶ 지역사회 종합아동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

- 아동양육사업 이외에 지역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
→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복지 욕구와 연계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 존재

출처: 정익중, 오정수. (2021). 아동복지론. 학지사.

▶ 다기능화 방안 검토(장애, 치료)

-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감소에 따른 다기능화 방안 모색
→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
-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배치 불균형 발생
→ 아동양육시설 일부 기능을 전환하여 타 분야 사업으로 기능 전환 유도 방안 검토 필요
- 아동양육시설 다기능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모델 제시 필요
→ 입소 아동 특성 변화에 따라 아동 상담 및 문제 치료 기능 필수화 및 전문상담원 배치 검토

출처: 김정득 외. (2012).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 기능전환 및 다기능화에 대한 연구. 대전복지재단.

탈시설 관점에서의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

➡ 기능 다각화

- (초점) 탈시설은 시설 폐쇄가 아닌 보호아동을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
 - 시설은 치료나 기타 아동 서비스의 거점 등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전제
 - 기능 전환은 시설의 양육기능을 다른 필수기능으로 확장하는 것이지 전문성 제고는 아님. 전문화보다 다각화가 적절
- 탈시설 자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아동양육시설은 폐쇄되어야 하나 일시적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존재.
 - 아동이 포함된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 다기능화 필요
- 탈시설의 대안적 용어 검토 필요
- 탈시설의 대상과 범위 명확화 필요
 - 아동의 관점에서 '시설'의 요소를 완화하는 접근 필요
- (탈시설 준비 여건 마련)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입소 제한 수단 강구

▶ 공동생활가정의 정체성과 기능 전환

- 시설보다 가정에 유사하나 가정위탁 방식도 아니고 현행법상 시설에 해당
- 보호형태 및 운영방식 전반에서 시설형을 지양하므로, 공동생활가정의 성격에 대한 논의 필요
- 공동생활가정의 ‘시설형’ 운영 방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아동 그룹홈이 아닌 공유주거, 독립주거, 사회적 지원주택 등 다양한 보호+주거 결합 서비스가 대안으로 함께 모색되어야 함.

▶ 아동의 가정외보호체계 다층화를 통한 기능 전환

- 일반양육시설 vs. 치료형 시설
- 그룹홈 vs. 치료형 그룹홈
- 가정위탁 vs. 전문가정위탁
 -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 조기 개입, 아동 예후를 장기적으로 사례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치료형 시설·그룹홈, 전문가정위탁에서는 생활보다 사례관리 가능한 환경 조성

2.2 선행연구 시사점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 지역 분산화 시도

▶ 소규모 가정형 시범사업('22.9.1~'23.8.31)

-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 분산화는 국내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전환 방향으로 자주 제안
- 시범사업: 지역 인근 소재의 건물로 아동 10명이 생활지도원 6명, 커뮤니티 매니저 1명과 이동하여 생활

▶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구분	성과	한계
아동	• 소규모 시설에 대한 만족감 • 개인 방 사용에 따른 일상 속 자유 • 낙인감 감소(건물 외형 변화, 친구 초대 가능) •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는 생활	•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보 부족 • 협소한 공간, 방음 문제로 인한 불편함 • 아동 간 교류 감소, 외로움 증가 • 종사자와의 소통 어려움, 갈등 심화
종사자	• 새로운 보호형태에 대한 기대 •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 가능 •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 • 유연한 규칙 적용 • 아동 의사결정과정 존중	• 업무량 증가(행정, 돌봄)와 소진 • 아동양육에 집중할 수 없고 대화 시간 부족 • 종사자간, 아동과의 갈등 발생 • 종사자와 양육자 역할에 대한 혼란 • 사생활 제약과 근무여건 악화

2.2 선행연구 시사점

▶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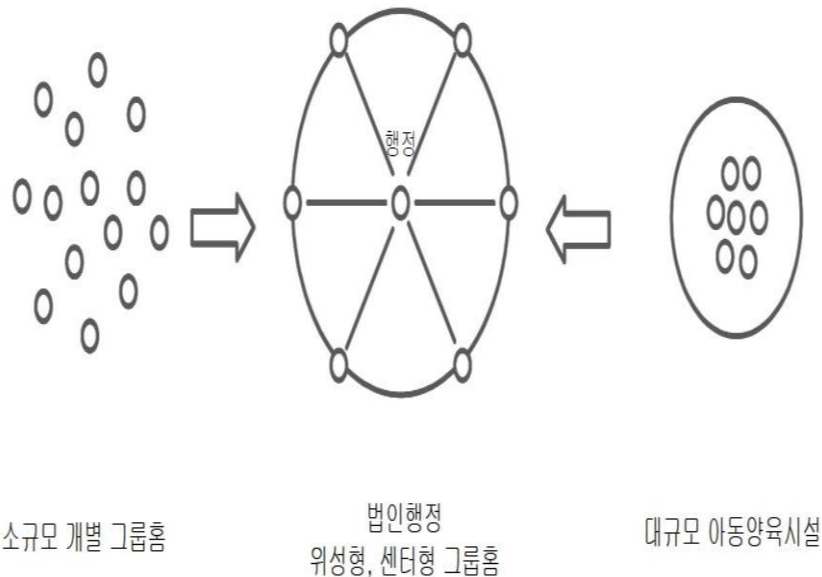
- 소규모화로의 시설 전환 과정단계별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즉, 전환 준비-전환 과정-전환 후 적응 단계별로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
- 관계 형성 및 갈등 해소 지원 필요
 - 아동 간, 종사자 간, 아동-종사자 간 신뢰와 관계 구축 지원, 갈등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지원 제공 필요
- 시설화 문화 최소화, 가정생활 최대화 필요
 - 아동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 같이 살 사람을 선택, 그 규모가 더 작아지며, 아동의 개별화된 욕구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종사자 업무 개선 및 처우 개선 필요
 -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지원 인력 추가 배치 필요(생활지도원이 가사, 돌봄, 교육, 심리정서 지원을 모두 담당하는 상황)
 - 종사자 근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필요
 -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 제도적 지원 필요
 - 공간과 인력 지원을 위한 예산 투입이 중요

2.2 선행연구 시사점

▶ 행정·보호·양육 업무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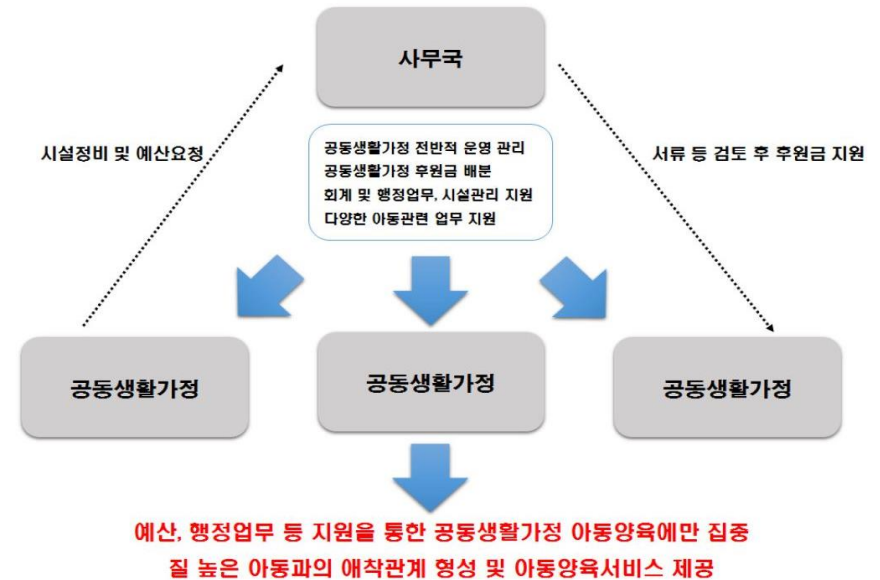
- 소규모 공동생활가정 방식으로의 전환 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종사자의 행정업무와 보호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위성형/센터형, 염주형이 제시된 바 있음

위성형/센터형



출처: 정익중. (2014). 그룹홈 실태조사 결과 및 발전방향 제언. 20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형 기획사업. 아동그룹홈 세미나와 사례관리 강화를 통한 공동생활가정 역량강화사업: 실태조사 발표 및 발전방향 세미나. p.83에서 발췌.

염주형



출처: 장진희·허청아. (2015). 대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전환비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77에서 발췌.

3.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의 방향성



3.1 기능 전환 방향성

원칙 및 방향성

- 보호대상아동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을 다각화 및 일부 전문화하는 것으로 제안

원칙	아동·가족 중심 서비스 제공	전문성 강화	단계적 전환
방향성	1 일시적·단기적 시설보호 지향 2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관계 회복 서비스) 3 아동·가족 욕구 기반 서비스 제공 (맞춤형 통합 방식)	1 기능 세분화 및 전문화 (복합기능형 또는 치료형 특화) 2 사례관리 체계화 3 전문인력 자격 및 역량 강화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	1 단기 및 중장기 전환 2 서비스 제공 및 공급의 형평성 보장(지역별 편차 최소화) 3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3.1 기능 전환 방향성

➡ (원칙 1) 아동 중심에서 아동과 가족 중심의 기능 전환

- 긴급 일시보호 중심의 시설 기능 지향
- 가족관계 회복 및 원가정 기능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제공
-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의에서도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만 명시되어 있어 아동 보호와 가족 지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능이 포함될 필요

➡ (원칙 2)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전문성 강화

- ‘기능 전환’에 대한 개념 설정 시, 보호대상아동 특성 변화와 가정보호 활성화 및 시설보호 지양의 정책적 기초 고려 필요
-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대상아동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은 다각화와 함께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아동의 연령대, 특별한 치료나 보호의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동복지시설 필요

➡ (원칙 3) 단계적 전환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에 관한 논의는 장기간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적 한계가 많음
- (단기) 아동보호·양육서비스 집중, 일시보호 기능 강화, 치료형 시설 확대
- (중장기) 지역사회 내 아동 대상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확대
- 특히 일시보호나 보호치료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지역별 편차 최소화될 필요
- 기능 전환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3.2 시설유형별 기능 전환(안)

아동일시보호시설

- 17개 시·도 지역편차를 최소화
- 연령대별(영아-아동-청소년)로 소규모 주택형 일시보호시설 세분화 검토 가능
- 집중 심리정서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신설 검토 가능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특화: 단기 보호, 중장기 보호, 전문서비스 등 검토 가능
- (단기) 지역사회 가정외보호 거점기관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 (장기) 생활형은 점차 축소하고, 치료형 시설로 전환하여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전문성을 특화하거나 양질의 대안적 돌봄 기관,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서 기능

공동생활가정

- 아동보호·양육기능과 행정기능을 분리하는 위성형 또는 염주형 공동생활가정 검토 가능
- 현재는 가정보호의 대안적 기능을 수행하나, 열악한 보호·양육환경 개선 시급

아동보호치료시설

- ‘가’목과 ‘나’목의 시설의 정체성 정립 및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필요
- 전문 아동보호치료시설로서 기능을 강화
- ‘보호+치료+교육+자립’의 측면에 종합적인 지원도 검토 가능

자립지원시설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에 따라 자립지원시설의 정체성 확립 필요
- 자립지원시설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타 유형의 아동복지시설(예: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과 기능 조정 검토 가능

3.3 기타 논의사항

➤ 아동복지시설 ‘기능 전환’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개념·정책 방향성 설정과 지원 필요

- ‘기능 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인식 공유 필요. 이는 최근의 가정보호 활성화 및 탈시설화 논의와 함께 검토될 필요.
-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으나, 정부의 아동복지시설 기능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방향성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제시 필요(어떠한 기능, 어떻게 전환?!)
 -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인력, 예산, 환경 조성 등 적극적·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기능 전환이 필요한 아동복지시설의 범위 설정 필요

- 현재는 주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으로 기능 전환 논의가 이루어짐
- 기능 전환의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범위 검토 필요
- 전문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보호대상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이 검토될 필요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유연화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에서는 동법 제52조와 관련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을 시설별로 아동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시(15개 직종)
- 최근의 보호대상아동 특성 변화에 맞추어 시설유형별로 아동의 서비스 욕구, 지원 내용 및 정도가 상이하므로 현재 경직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유연화하여 시설이 필요한 직군의 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 필요

감사합니다.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EADING THE WAY IN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SOCIAL SECURITY